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3-03-27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7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9나66558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A 입주자대표회의

피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전 명칭: 대한주택공사)

피고보조참가인 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3. 파산자 주식회사 D의 파산관재인 E

제 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6. 18. 선고 2006가합11094 판결

변 론 종 결 2011. 9. 28.

판 결 선 고 2012. 1. 18.

주 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746,459,250원 및 그 중 1,673,082,513원에 대하여는 2008. 8. 14.부터 2012. 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나머지 73,376,728원에 대하여는 2011.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서 963,576,671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23.부터 2012. 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나. 피고의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포함)은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총비용은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 중 제1심 판결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 및 제2의 가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68,155,839원 및 그 중 2,494,779,111원에 대하여는 2008. 8. 14.부터 2009. 6.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나머지 73,376,728원에 대하여는 2011. 8. 30.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제1심 판결 금액에 따라 청구취지를 감축하면서, 각 동 최상층 세대 천장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2,646,858,111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22.부터 당심 판결 선고 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F 아파트 15개동 975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이 선출한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안산시장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이를 분양한 사업주체이며, 피고보조참가인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급 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사들이다.

나. 피고는 1999. 6. 30.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고, 2000. 5. 26.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다음, 2000. 6. 1.부터 분양신청을 받아 같은 달 15일과 16일에 걸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02. 4. 20. 안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를 받았다.

라.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걸쳐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외



벽균열 등 하자(이하 ‘이 사건 각 하자’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감정기준 시점인 2006.

11. 21. 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하자를 보수하는 데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15,697,100원(= 공용부분 1,508,660,100원 + 전유부분 707,037,000원)(외벽균열 부분도장)의 비용이 소요된다.

구 분		합계(단위: 원)	
공용부분		1. 건축부분	735,463,000
		2. 건축기계설비개선공사(공용부분개선공사)	9,469,000
		3. 건축기계설비개선공사(부대부분개선공사)	66,427,000
		4. 전기설비	3,666,000
		5. 기타 하자	168,926,100
		소 계	983,951,100
전유부분		1. 건축부분	119,485,000
		2. 건축기계설비개선공사(전유부분개선공사)	5,377,000
		3. 기타 하자	955,000
		소 계	125,817,000
제1심 추가감정		1. 미시공 및 저가품질 시공항목	공 용 60,216,000
			공 용 105,125,000
		2. 하자 및 오시공 항목	전 유 34,706,000
			계 139,831,000
		3. 설계변경에 의한 품질 등이 하락한 항목	공 용 287,291,000
			전 유 518,492,000
			계 805,783,000
		4. 기타 시공하자	전 유 7,315,000
		소 계	1,013,145,000
당심 추가감정			공 용 72,077,000
		각 동 최상층 세대 천장 누수	전 유 20,707,000
			계 92,784,000
		합 계	2,215,697,100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후 이 사건 아파트 총 975세대 중 965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각 양도받고(별지 3 참조), 채권양도 통지권한도 위임받아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각 통지하였다. 채권양도 절차를 마친 세대의 전유면적을 전체 세대의 전유면적으로 나눈 비율은 99.04%(=



53,004.54m²/53,517.69m² × 100%,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이다.

바. 한편 위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 중 원고에게 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한 세대들의 하자보수비 합계액은 688,897,092원(= 제1심 감정 하자 내역에 대한 보수비 668,561,241원 + 당심 감정 하자보수비 20,335,851원)이다 (별지 3 및 별지 4 참조).

[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12, 갑 제7호증의 1 내지 75,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의 1 내지 15, 을나 제1호증의 1, 2, 을나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G의 일부 감정결과, 당심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및 감정보완결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 및 경기도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에서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근거법령 및 책임의 발생

개정된 주택법(2005. 6.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된 것) 및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부칙 제6조가 시행된 2005. 5. 26. 이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관하여 그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법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 개정 주택법 제46조를 적용할 수 없고, 집합건물법 제9조 및 그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및 범위가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건물의 사용검사일은 개정 주택법 및 개정 집합건물법 부칙 제6조가 시행되기 전인 2002. 4. 20. 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분양자로서 집합건물법 제9조 및 그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따라,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

피고와 보조참가인들(이하 피고와 보조참가인들을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은, ① 이 사건에 개정 주택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각 하자 중 일부는 주택법령이 규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것이라거나(특히, 1년차 하자는 보수를 완료하였으므로 현존하는 하자는 그 이후 발생한 것이다), ② 제척기간에 관하여, 건물 중 물리적인 분리나 교체, 개별적 보수가 가능한 부분은 민법 제670조의 원칙으로 돌아가 1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이 사건에 개정 주택법 제46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위 가항에서 본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70조와 제671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는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그 기간은 인도 후 10년이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 2011. 4. 14. 선고 2009다8206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하자보수를 시행하였더라도 하자가 여전히 남아 있다면 위 10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는 담보책임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사업승인도면 대비 변경시공



1) 관련 법령

이 사건 아파트 사업승인 당시 시행되던 관련 법령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과 성상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이 선분양·후시공의 방식으로 분양이 이루어지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계약이 체결될 당시 아직 착공 전이거나 시공 중이기 때문에, 수분양자로서는 직접 분양 대상 아파트를 확인할 길이 없고, 오직 분양자가, 관련 주택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으면서 제출한 도면(기본설계도면)과 착공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도면(실시설계도면)에 따라 아파트를 건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선분양·후시공의 분양 관행에, 앞에서 적은 관련 주택법령이 이러한 분양방식을 허용하면서도 그 절차 및 그에 따라 제출할 도서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사정을 덧붙여 볼 때, 분양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승인도면 및 착공도면의 내용대로 아파트를 건축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그와 달리 시공된 부분은 그 변경시공된 부분이 사업승인도면 및 착공도면에서 정한 것에 비해 성질이나 품질이 향상된 것이 아닌 한 당해 분양계약에서 보유하기로 한 품질이나 성상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분양자는 그 부분에 관하여 하자담보책임



을 부담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 1 표 중 아래에 적은 항목들은 이 사건 사업승인도면과 달리 하향 품질로 변경시공되거나 미시공된 하자들로서 피고가 그에 대한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항 목 번 호	금 액
1-1. 공용부분(건축)	
55) 주민복지관 2층 숙직실 결레받이 비닐시트 시공 누락	82,000
56) 주민복지관 지하층 체력단련실 결레받이 폐인트 시공 누락	72,000
58) 주민복지관 지하층 창고의 조적벽체 상부 미장 마감 누락	136,000
61) 재활용품보관소 배수시설 시공 누락	151,000
1-5. 공용부분(추가부분)	
10) 단지내 공중전화누락, 외곽담장 장미누락, 관리동 도서관 책상 등 집기 비품 없음	14,903,000
2-1. 전용부분(건축부분)	
5) 20평 A,B형 발코니2/ 20평 C형 발코니3 및 24평형 발코니3,4 배수시설 미시공	50,704,000
3-3. 추가감정신청사항(설계변경에 의한 품질 등 하락항목)	
1) 각 동 계단실 및 연결통로 지하층 벽 하부 낙서방지용 폐인트 범위 축소	7,764,000
2) 일부 동(계단형) 계단실 3층 이상 벽 낙서방지용 폐인트 삭제	
3) 일부 동(복도형) 최상층 복도 천장 단열 및 마감 삭제	6,445,000
4) 일부 동(계단형) 지하층 정면측 창호 삭제	34,689,000
5) 각 동 계단실 ~ 옥탑층 바닥 마감 변경	94,481,000
6) 각 세대 외기와 면한 천장 상부 결로방지제 시공 축소	24,151,000
6) 각 세대 외기와 면한 천장 상부 결로방지제 시공 축소	16,104,000
7) 각 세대 창문 재질 변경 (사업승인 · 변경도면: 알루미늄, 사용승인: 플라스틱) - 변경시공	207,767,000
7) 각 세대 창문 재질 변경 (사업승인 · 변경도면: 알루미늄, 사용승인: 플라스틱) - 미시공	103,961,000
9) 각 동 최상층 세대 침실 및 거실, 주방, 현관 천장 단열재 및 천장판 삭제	166,509,000
10) 지하주차장 바닥 마감 변경(사업승인: 고무아스팔트몰탈, 사용승인: 칼라하드너)	140,268,000
12) 복지관 지하전기실, 발전기실 바닥 마감 변경 (준공전/1년차/변경시공)	1,151,000
13) 복지관 2층 문고, 주민공동시설, 주민상담실, 관리사무소 벽체 마감 변경	2,493,000



다) 위 하자항목들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다투나, 모두 이유 없다.

(1) 피고는 준공도면만을 하자판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준공도면은 건축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시행하는 경우 건축물에 객관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도면으로서 의미가 있다. 반면에 아파트가 사업승인도면 또는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되었다는 것은 분양계약에서 보유하기로 한 품질이나 성상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이른바 주관적 하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건축물의 하자 개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 하자뿐만 아니라 주관적 하자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마친 다음 그에 따라 분양안내서와 견본주택을 제작하였고 분양계약도 이를 기초로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와 수분양자들은 이미 변경된 설계를 기준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선분양·후시공 방식의 아파트 분양에서 분양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승인도면 및 착공도면대로 아파트를 건축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분양자가 위와 같은 설계도면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수분양자에게 그 변경사실을 알리고 설명함으로써 이를 적극적으로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시키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아니하고, 분양자가 일방적으로 설계를 변경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변경된 그 설계도면대로 시공하는 것이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해석한다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설계도면의 변경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여력이 없는 수



분양자들로서는 사업승인도면대로 시공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와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받을 우려가 있고, 사업승인 및 그 변경절차를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령의 취지까지 물각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특히 피고가 다투는, 위 추가감정항목 3-3 중 7) 각 세대 창문 재질 변경 항목을 보건대, 을가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0. 5. 26.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고 그 무렵 견본주택을 제작하여 공개하였으며, 당시 제작된 분양안내서에는 주요마감재시설내역으로 창호의 재질이 플라스틱이라고 적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견본주택의 창호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되어 수분양자들에게 공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창호의 재질이 플라스틱으로 하향시공된 사실을 피고가 수분양자들에게 알리고 설명하여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시키는 조치를 하지 않은 이상, 수분양자들로서는 여전히 이 사건 아파트의 창호가 사업승인을 받은 도면대로 제작될 것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앞에서 본 나머지 하자항목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3) 피고는 또한, 위에서 본 하자항목들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들이 아니라 경미한 설계변경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법령상의 신고 및 보고의무를 다 하였으므로, 사업승인도면과 달리 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우선 피고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기만 하면 어느 경우에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바대로 그 내용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상향시



공된 금액이 하향시공된 금액을 오히려 초과하므로 위 하자 항목들은 모두 경미한 설계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시행규칙 제1항 제5호가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재료의 품질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당시의 재료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라고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제5호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위 하자항목들은 주로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대하여 반드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어야만 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 하자항목들에 대하여 모두 변경사항으로 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을가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비교하여 볼 때 위 하자항목 중에서 추가감정항목 3-3의 1), 2), 3), 5), 9), 10), 13) 등 항목들에 대하여는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이어서 피고는, 사업승인도면에 비추어 변경시공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준공검사과정에서 모두 제출되어 검토된 결과 사용승인이 나는 것이므로, 위 사용승인이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 승인이라고 볼 수 있어서, 결국 위 변경시공에 대해서는 변경승인이 있는 것으로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축물 사용승인에 사업계획변경승인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제33조의 2에서 보듯이 사업계획(변경)승인권자와 사용검사권자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피고가 사업승인도면보다 상향시공해 준 금액이 위



에서 본 하자항목들의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이상, 이는 손익상계 등의 원리에 따라 상계되거나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은, 피고가 상향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분양자들이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가 상향시공한 부분이 있음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의 필요에 의한 것이지 수분양자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며, 수분양자들이 이를 동의하거나 추인하고 상향시공 부분에 따른 추가비용을 감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즉 수분양자들로서는 대가를 지급하면서까지 상향시공으로 인한 이익을 누릴 의사는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수분양자들에게 그 이득의 반환의무를 인정한다면, 수분양자들은 자신의 재산으로부터 자신의 결정과는 상관없는, 의외의 지출을 강요받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이는 강요된 이득에 해당하여 피고의 반환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한편 원고는, 위 하자항목 중 '7) 각 세대 창문 재질 변경'에 대한 하자보수 비용은 당심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아니라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심 감정결과와 대비하여 볼 때, 이 부분 제1심 감정결과는 알루미늄 창호에 대하여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받은 견적을 기초로 산정한 것인데, 이는 실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창호의 종류(단창, 이중창, 콩틀일체형 단창) 및 규격(폭 224mm, 내측 일면 목무늬 마감)과 일치하지 않고, 간접비와 노무비가 과다 계상되어 있으므로, 채택하기 어렵다.



원고는 당심 감정결과에 대하여, 플라스틱 창호에만 노무비를 적용하고, 플라스틱 창호의 재료비 단가를 실제보다 과다 계상하였으며, 목재창호 및 목재공틀의 단가를 축소하였고, 목재창호 및 목재공틀의 단가 산출 단위인 면적(m^2)을 길이 단위로 잘못 적용하고, 알루미늄 창호 및 플라스틱 창호의 단가 산출 단위인 'set'를 길이 단위로 잘못 적용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심 감정인에 대한 감정보완촉탁회보결과를 검토해 보건대, 당심 감정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엘엘샤시'의 기재사항에 따라 설치비를 별도로 산정한 점, 엘엘샤시를 기준으로 재료비를 산정한 점, 나아가 목재창호 및 목재공틀의 단가와 각 산출 단위를 적용한 방식 등에 어떠한 불합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외벽균열 하자보수

원고는 외벽균열 하자에 대하여 1회 전체 도장을 기준으로 보수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감정인 G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외벽균열 부위에 대하여 30cm 범위로 부분도색할 경우 도색면적이 전체의 7.06%에 불과하고, 보수비용도 전체도장을 할 경우보다 1억 5,000만 원 정도 절약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이 사건 아파트가 사용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이 사건 감정기준일까지 약 4년 7개월 정도 경과한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균열을 보수한 이후 전체 도장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때문에 미관상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외벽균열 하자에 대해서는 균열 부위를 20cm 범위로 도색한 후 폭 30cm 범위를 부분도장하는 방식에 따라 보수비용을 산정하기로 한다.

마. 0.3mm 미만 균열

- 1) 피고는 0.3mm 미만의 균열은 허용균열폭의 범위에 들어가므로 하자로 볼 수 없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감정인 G의 감정결과와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콘크리트 특성상 균열의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계절별로 온도차가 심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발생된 균열이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일률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균열을 보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표면처리 보수비용 단가 10,015원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었고, 일위대가 적용도 2005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할 때 이 사건 감정 기준시점인 2006. 11.경을 기준으로 할 경우 위 단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고, 일위대가는 2005년 것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외벽을 제외한 부위의 균열 하자보수

피고는 외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균열에 대해서도 부분도장의 방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감정인 G의 감정결과와 위 감정인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를 종합하면, 위 감정인은 외벽을 제외한 기타 부분의 균열에 대하여는 균열부위를 보수한 후 하자의 해당면을 전체도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균열이 발생한 부위의 미관상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위 감정인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 고소할증률

피고는 제1심 감정결과에서 인정한 고소할증률 50~60%는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를 보면, 위 감정인은 고소작업 장비사용을 배제하고 경제적인 줄타기 방법으로 하자보수하는 것으로 하고 위



할증률을 적용하였는바, 위 감정인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아. 예정가격의 87% 수준의 보수비용 주장

피고는 하자보수비를 산정할 때는 낙찰률을 고려하여 예정가격의 87%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하자보수비 산출을 위한 공사원가계산에 관하여 건설공사 일위대가표 및 한국물가협회 작성 물가표를 적용하는 한 이를 그대로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자. 개별 항목들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아래 표의 하자내역에 적은 항목들에 대해서는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판단’란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순번	하자내역	주장 요지	판단
별지 1 표 중 1-1 6)	주현관 출입구 하부벽체 시멘트몰탈 미시공	현재 시공된 상태가 견출마감 공법인 것은 사실이나,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가져올 정도의 하자라 할 수 없다. 품질향상을 위해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였으므로 보수비용 산정에 참작하여야 한다.	미시공된 부분에 한해 사용승인 도면대로 시멘트 몰탈을 시공하는데 드는 비용을 산출하였으므로 적정한 보수비용이다. 양질의 거푸집이 시공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할 자료가 없다.
1-1 7)	1502동 1층 출입구 장애인 램프 난간 파이프 파손	이삿짐 운반 등 사용자의 과실에 의한 외부 충격으로 훼손된 것이므로 원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다.	하자가 발생하게 된 근본원인은 난간을 고정하는 부위가 부실시공 되었기 때문이다.
1-1 8)	1512동 1층 장애인 램프 난간 마감부위 파손	원고가 정기적인 보수관리를 하지 않아 장기간 균열을 방치한 결과이다.	시공된 콘크리트 턱의 부실시공 (몰탈미장)으로 몰탈면이 파손되어 난간이 탈락된 것이다.
1-1 10)	GL에 접한 벽체 바닥침하에 의한 외벽 노출	화단의 표토정리는 원고의 유지관리 사항이다.	지하층 공사 시 굴착 후 되메우기하였던 부분이 부실시공되어 침하됨으로써 벽체 일부가 노출된 것이다.



1-1 15)	각동 옥상층 배수로 줄눈 미시공	건물의 옥상배수로에는 바닥줄 눈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배수로는 보호몰탈이 아니라 방수마감층인데, 방수마감 층을 절개하여 줄눈을 설치하는 것은 방수층을 절단하는 것 이므로 불가능하다. 아니라면 줄눈을 파내는 방식에 의한 보수비를 산정해야 한다.	미시공된 옥상 배수로 바닥의 줄 눈을 시방서대로 시공하는데 드는 비용을 산출한 것이어서 적정하다.
1-1 17)	1508동 등 옥상 대피소 벽체 방수 턱 시공 누락	사용승인도면상의 오류를 수정하여 시공한 것으로, 방수 기능 및 미관, 안정상 지장이 없다.	사용승인도면과 코아단면상세도 대로 시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의 주장은 인정할 자료 없다.
1-1 22)	각동 현관문 주위, 창호 주위 등 바닥균열	지붕과 옥탑 바닥에 시공된 바 닥 몰탈의 균열은 수축팽창에 따른 균열이므로 보호몰탈로서 기능상 지장이 없다.	개구부 응력집중 및 건조수축, 바닥보호몰탈 부실시공 및 재료 배합 부량, 건조수축 등의 원인에 의해 균열이 발생하였다.
1-1 30)	계단실 바닥 테라조 타일 파손 및 균열, 벽체마감 불량	시공상 잘못이 없고, 균열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	일부 테라조 타일에 파손 및 균열이 발생되었고, 계단실 벽체의 배관이 트레이 매입부분에 도장 을 미시공하였다.
1-1 31), 32), 35)	지하대피소 벽체균열, 천장균열, 바닥 및 벽체몰탈 들뜸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정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다.	응력집중 및 건조수축, 부실시공 등의 원인으로 균열과 몰탈들뜸이 발생하였고, 일부 균열부에서는 백화가 발생되었다.
1-1 40)	지하주차장 경사로 연석부위 오픈트렌치 미시공	사용승인도면상의 오픈트렌치 형태의 공사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표준적인 방법으로 변경 시공되었다.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1-1 41)	지하주차장 외벽 천장 보액체방수 및 보호몰탈 시공 누락	외부쪽 방수를 보강하여 내부 쪽 방수가 생략된 것으로,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 아니다.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1-1 43)	지하주차장 기둥 코너 범퍼 높이 규정 미달	당초 사용승인도면대로 시공되었으나 외부충격으로 파손된 것이다. 사용자측 과실이다.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1-1 52)	지하주차장 보수 후 마감 미처리 및 전장데크 플레이트 녹	누수균열부위 주변으로 폭 1m 내외로 그라우팅 보수공법을 실시하면 보수가 완료되므로, 위 범위를 넘는 보수비용은 삭	외부화단이나 조경부분 등을 걷어내고 방수공사를 할 경우 누수부분을 정확히 찾기 어렵고 공사가 난해하여, 다소 보수범위를



	발생	감되어야 한다.	넓혀 그라우팅 공법에 의한 보수 방법을 제시한 감정인의 판단이 적정해 보인다.
1-1 66)	단지내 고압블러 및 점토블러의 물고임 등	시공상 잘못이 없다.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보수관리를 하여야 할 대상이다.	보조기총 및 모래 안정총 포설 등 다짐불량에 의해 일부 고압블러 및 점토블러가 침하되어 균열이 발생하거나 침하된 것이다. 일부 장애인 진입부 바닥은 단차가 심하여 휠체어 등 통행에 지장이 있다.
1-1 67)	단지 내 산책로 및 L형 축구 등 물고임	시공상 허용오차 범위 내의 경미한 사항 또는 반복사용에 의한 토사의 침하, 유출이다.	시공부실 및 다짐불량 등에 의해 부분 침하되거나 면치리가 불량하여 우천시 물이 고이는 것이다.
1-2 7) (1)	배수펌프 배관 방진이음미시공	자흡식 펌프로 방진이 필요 없는 부분이다.	시방서대로 시공되지 아니하였다.
1-2 7) (1)	배수펌프 배관 일부 압력계 위치 오시공	압력계가 정상 설치되었다.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뒤집을 자료가 없다.
1-2 8) (1)	오배수관 소제구 일부 오시공 소제공간 확보 불량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었으나, 일부 구간은 소제공간 확보가 불가능하다.	감정인은 소제구 주위의 공간이 협소하여 청소하기 불가능한 개소에 한해 소제구를 조정 시공하는데 드는 비용을 산출한 것으로, 위 감정결과가 적정하다.
1-3 6)	상수도 소화전 매립 불량	조경화환 등 표토는 설계도면에 맞게 시공되었으나, 폭우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의해 일부 지반 표토가 유실된 것이므로, 원고가 유지 보수하여야 할 사항이다.	상수도 소화전 주위의 흙에 대한 다짐작업이 부실하였다.
1-3 9)	관리동 장애인 용변기 고정 불량	고정불량으로 인한 흔들림 현상은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고정불량은 시공상 잘못이다.
1-4 8)	중앙 분수대 막 대형 조명등 밑 부분 고정 불량	고정불량으로 인한 흔들림 현상은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볼라드등 9개에 대한 하단부 고정불량은 시공상 잘못이다.
1-4 13)	지하조서 결로 등 전등회로 누전 불량	원고가 유지 관리하여야 할 사항이다.	결로 등으로 기능이 불량하다.



1-4 14)	방재실 화재수 신반 오작동	소모성 부품으로 구성된 설비로 사용자가 유지 관리하여야 할 사항이다.	GR형 복합수신기에 여러 차례 에러메시지가 나타나 아파트 자체에서 중계기를 보수하였다.
1-5 11)	아파트 옥상 배수로 안전 난간 없음	옥상배수로는 지붕이므로 난간은 필요 없으며, 설계도면에 맞게 시공되었다.	아파트 옥상 출입 등 점검 및 하자보수 등 유지 관리 시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건축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성상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2-1 5)	발코니 배수시설 미시공	발코니는 외부에 창이 설치되어 실내로 사용되고 있어 배수구를 막아 놓고 사용하는 것이 현실이어서 이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것이다.	사업승인도면에 비추어 미시공된 하자이다.
2-1 6), 7)	현관 문틀 등 결로로 곰팡이 및 녹 발생 측벽체 등 결로 및 녹 발생	일부 세대 내부 벽체 곰팡이 녹 발생은 환기 부족 등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다.	관련 법규에 비추어 볼 때, PE 필름 1겹이 미시공되었고, 열판류율이 미달되었다.
2-1 8)	욕실, 발코니 벽 바닥타일 균열 및 들뜸	외부충격 등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다.	옹력집중 및 부실시공 등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다.
2-1 10)	침실문짝 개폐 불량 등	장기간 사용 및 사용상 과실로 인한 것이다.	목재표준 견조상태 불량이 원인이 되었다.
2-1 11)	주방기구 등 수직, 수평불량, 흔 이격 등	장기간 사용 및 사용상 과실로 인한 것이다.	부실시공 및 불량재료 등이 원인이 되었다.
2-1 12)	거실, 주방 바닥재 이격 들뜸	장기간 사용 및 사용상 과실로 인한 것이다.	건조수축 또는 품질 등의 원인과 배수관 역류로 인하여 바닥재 오염 등이 발생하였다.
2-1 1)	일부위생설비 시공불량	장기간 사용 및 사용상 과실로 인한 것이다.	고정 시공불량 등 원인으로 발생하였다.
3-1 1)	지하주차장 환기구 지붕 미설치	사용승인도면에 따라 시공되었다.	우천시 지하주차장으로 빗물 및 오염물질이 떨어져 환기구 하부 주차공간에 10대 정도 주차를 못 하고 있으므로, 이는 건축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성상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3-2 2)	지하주차장 램프 입구 부위	설계도면에 표기되어 있지 않다.	해당부위 바닥은 지하층인데 누수되어 바닥에 물이 고여있거나



	및 지하주차장 계단 배수로 미 설치		젖어있는 상태여서 사용상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이는 건축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성상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3-2 3)	조경부위 녹지 경계석 높이 오 시공	기능이나 미관, 안정상 지장이 없다. 하자로 인정되더라도 철거 후 재시공은 과다한 비용이 소요된다.	우수시마다 토사 및 오물이 보도나 도로로 흘러내리고, 하절기에는 도로나 보도로 잔디나 풀이 자라나오고 있으므로, 감정인의 판단한 보수방법이 적정하다.
3-2 5)	난방배관 누수 방지공사	퇴수관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어 기능상 장애가 없다.	퇴수관 기능 기능회복 및 유지관리를 위한 감정인의 판단이 적정하다.
3-4 1)	싱크배수용 바 닥 배수관 역류	사용자 관리소홀로 음식물 찌꺼기 등이 배수에 지장을 주는 것이다.	배수관 역류 세대의 규모를 볼 때 보수가 필요하다는 감정인의 판단이 적정하다.

2) 한편, 아래 표의 항목들은 각 ‘판단’란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하자라고 볼 수 없거나 하자보수비 중 일부를 감액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순번	하자내역	판단
별지1 표 1-1 26)	각 동 계단실 계단 옆면 마감 누락	감정인이 기준으로 삼은 상세도는 계단난간 상세도이지 계단참 상세도가 아니다. 현재 시공상태는 계단단면 상세도에 따른 것이므로 하자라고 볼 수 없다.
1-1 44)	일부 공동구 바닥 액체방수 치 켜올림 미시공	시방서에 의하면 몰탈 두께는 15mm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하자보수비용 중 2,406,000원은 감액되어야 한다. [인정금액 9,795,000원]
1-1 65)	운동장 투시형 훈스 일부 누락	투시형 훈스는 설계도면과 같은 높이로 신설하는 비용을 산정하여야 하고, 투시형 훈스를 대신하여 담장이 대체시공된 부분은 비용 산출에서 제외할 것이다. 따라서 하자보수비용 중 4,179,000원은 감액되어야 한다. [인정금액 1,303,000원]
1-2 1)	건식 PD 수도계량기함 뒤 철판	설계도면에 수도계량기 함 뒤 철판에 대한 명기가



	미시공	없으므로, 현재 시공된 상태는 설계도면에 따른 것 이어서 하자라고 볼 수 없다.
1-3 1)	소화전함 및 방수기구함 전면 판 재질 오시공	설계도서작성기준에 의하면 공사시방서(특별시방 서)가 설계도면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건식PD는 공 사시방서에 따라 시공된 부분이므로 하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보수비용은 감액되어야 한 다. [인정금액 59,981,000원]
1-4 17)	지하주차장 사각지대 발생	지하주차장 CCTV는 설계도면대로 설치되었고, 사 각지대 방지규칙은 이 사건 아파트 준공 당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자라고 볼 수 없다.
1-5 2)	관리사무실 하자 선집행	부가가치세가 2중 계산되었으므로, 467,900원이 감 액되어야 한다. [인정금액 4,687,100원]
1-5 8)	각동 1층 주현과 옆 캐노피 우 수배관 빗물받이 미시공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 하 자라고 볼 수 없다.
3-1 3)	단지 내 콘크리트 경계석 시공	설계도면에는 단지 내 경계석의 재질에 대한 표기 가 없고, 콘크리트로 경계석을 설치한다고 하여 기 능, 미관, 안정상 지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하자라고 볼 수 없다. 14단지의 경계석 설치 여부는 하자 판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차.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 후 제1심 하자감정시까지 5년 남짓한 시간이 경
과되어 자연발생적인 노후현상이 있을 수 있는 점, 원고의 관리상 잘못으로 하자가 확
대되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환경적 요인 및 재료적 특성에 따라 콘크
리트의 미세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신의칙과 공평
의 원칙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전체 보수비용의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카.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

- 1) 공용부분 1,195,341,569원



{ = 1,138,233,521원(제1심 감정 대상 하자보수비 1,436,583,100원 × 채권양수비율 99.04% × 피고의 책임비율 80%) + 57,108,048원(당심 감정 하자보수비 72,077,000원 × 채권양수비율 99.04% × 피고의 책임비율 80%), 원 미만 버림(이하 같다)}

2) 전유부분 551,117,672원

{ = 534,848,991원(제1심 감정 대상 하자보수비 668,561,241원 × 80%) + 16,268,680원(당심 감정 하자보수비 20,335,851원 × 80%)}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1,746,459,250원 (= 공용부분 1,195,341,578원 + 전유부분 551,117,672원) 및 그 중 1,673,082,513원(= 제1심 감정 대상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1,138,233,521원 + 제1심 감정 대상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534,848,992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08. 8. 14.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8. 8.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2. 1.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당심 추가감정 대상인 나머지 하자보수비 73,376,728원(= 공용부분 57,108,048원 + 전유부분 16,268,68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1. 8. 30.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1.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판단

가.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494,779,111원 및 이에 대한 2008. 8. 14.부터 2009. 6.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을 명하는 한편, 위 인용금액에 대하여 가집행의 선고를 하였다. 그리고 을가 제2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9. 7. 22. 원고에게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따른 원금 및 지연손해금으로 합계 2,646,858,111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제외한 손해배상금액으로 1,673,082,513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14.부터 2012. 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인정하는바, 이로써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 중 당심이 인용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 판결의 선고로 실효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령한 가지급금 중 당심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위 실효부분에 해당하게 된 금액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그 반환범위에 관하여 본다.

1)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가지급금은 2,646,858,111원이다.
2) 앞서 인정한 당심 인용금원을 기초로 위 가지급금 지급일(2009. 7. 22.) 현재 원고가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원금: 1,673,082,513원

* 지연손해금: 10,198,927원

$$\{ = 1,673,082,513원 \times (5\% \times 309/365 + 20\% \times 34/365) \}$$

* 합계 1,683,281,440원(= 1,673,082,513원 + 10,198,927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3-03-27

3) 따라서 피고는 2009. 7. 22. 원고에게 963,576,671원(= 2,646,858,111원 - 1,683,281,440원)을 초과 지급하였다.

다. 그러므로 가지급물반환신청신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963,576,671원 및 이에 대한 위 가지급물 수령일 다음날인 2009. 7. 23.부터 당시 판결 선고일인 2012. 1.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제외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철익

판사 정철민



별지 1. 하자항목별 공사내역표 및 하자보수비용

하 자 항 목	합 계
1-1. 공용부분(건축)	
1) 각 동 측벽 충간, 수직균열 다수 발생	
2) 각 동 전·후면 발코니 복도난간 벽체 충간, 수직, 경사균열 및 누수, 백화 다수 발생	
3) 각 동 계단실 및 ELEV 벽체 충간, 수직 마감 균열 다수 발생	221,417,000
9) 각 동 철근 피복불량에 의한 부식으로 녹물 및 철근노출 다수 발생 (준공후/하자발생/3년차) - 20cm+30cm	
4) 1507동 주출입구 캐노피 상부 수직, 수평균열 및 누수, 백화 일부 발생	
5) 각 동 출입구, 장애인램프, 필로티 균열 및 접합부, 코너주위 틈 다수 발생 (준공후/3년차/하자발생) - 20cm+전체도장	16,328,000
6) 각 동 주현관 출입구 하부 벽체 시멘트 몰탈 미시공 (준공전/1년차/미시공)	1,663,000
7) 1502동 1층 출입구 장애자 램프 난간 SST PIPE 파손 일부 발생 (준공후/2년차/하자발생)	759,000
8) 1512동 1층 출입구 장애자 램프 난간 마감 부위 파손 일부 발생 (준공후/1년차/하자발생)	224,000
10) 각 GL에 접한 벽체 바닥 침하에 의한 외벽노출 다수 발생 (준공후/2년차/하자발생)	2,415,000
11) 각 동 ELEV 기계실 바닥 균열 다수 발생 (준공후/3년차/하자발생)	2,228,000
12) 각 동 옥상층 옥탑의 외벽균열, 캐노피 및 방수턱 균열 다수 발생 (준공후/2년차/하자발생)- 20cm+30cm	10,484,000
12) 각 동 옥상층 옥탑의 외벽균열, 캐노피 및 방수턱 균열 다수 발생 (준공후/3년차/하자발생)- 20cm+30cm	9,461,000
13) 각 동 옥상층 배수로 및 대피소 바닥균열 일부 발생 (준공후/3년차/하자발생)	10,552,000
14) 각 동 옥상층 경사지붕 벽체균열 및 경사지붕 하부 바닥균열 다수 발생 (준공후/2년차/하자발생) - 20cm+30cm	6,601,000
15) 각 동 옥상층 배수로 줄눈 미시공 - 각 동 공통 (준공전/1년차/미시공)	26,647,000
16) 각 동 ELEV 기계실 및 1504동 물탱크실 창호 한쪽면 유리 코킹 시공 누락 (준공전/1년차/미시공)	936,000
17) 1503, 1505, 1511, 1515동 옥상대피소 벽체 방수턱 시공 누락 (준공전/2년차/미시공)	928,000
18) 1503, 1505, 1511, 1515동 ELEV 기계실의 계단실에 면한 벽체 단열재 시공 누락 (준공전/1년차/미시공)	237,000
19) 각 동(1501, 1502, 1506, 1507, 1508, 1509, 1512, 1513, 1514, 1515동) 옥상대피소 및 후면배수로 바닥 물고임 (준공후/1년차/하자발생)	3,549,000
20) 각 동 옥상층 경사지붕 내부 벽체 단열재 틈새 과다 발생 (준공전/1년차/하자발생)	71,000
20) 각 동 옥상층 경사지붕 내부 벽체 단열재 틈새 과다 발생 (준공후/1년차/하자발생)	198,000
21) 각 동 계단실 벽체, 천장 균열 다수 및 벽체의 균열부위 누수 다수 발생	
23) 각 동 계단실 벽체 코너 접합부 틈 다수 발생	
24) 일부 동 지하 계단실(PIT층)과 지하주차장 연결 통로 천장 벽체 누수 발생	100,805,000
25) 각 동 계단실 벽체 몰탈 박리 발생 (준공후/3년차/하자발생)	



22) 각 동 현관문 주위, 창호 주위, ELEV 훌 출입문 주위 균열 및 지붕층(PH2), 옥탑1층(PH1) 바닥균열(몰탈) 다수 발생 (준공후/1년차/하자발생)	4,147,000
26) 각 동 계단실 계단 옆면 마감 누락 - 각 동 공통 (준공전/1년차/미시공)	0
29) 계단실 PD상부 오염 불량 다수 발생 (준공전/1년차/미시공)	1,971,000
29) 계단실 PD상부 오염 불량 다수 발생 (준공후/1년차/하자발생)	4,558,000
30) 계단실 바닥 테라조 타일 파손 및 균열, 벽체마감 불량 발생 (준공전/1년차/미시공)	64,000
30) 계단실 바닥 테라조 타일 파손 및 균열, 벽체마감 불량 발생 (준공후/1년차/하자발생)	23,546,000
31) 각 지하대피소 벽체 균열 일부 발생	3,080,000
32) 각 지하대피소 천장균열 일부 발생 (준공후/1년차/하자발생)	
31) 각 지하대피소 벽체 균열 일부 발생	2,670,000
32) 각 지하대피소 천장균열 일부 발생 (준공후/3년차/하자발생)	
33) 각 지하대피소 창호유리 한쪽면 코킹 시공누락 다수 발생 (준공전/1년차/미시공)	1,226,000
34) 1508동 3호 지하대피소 천장 단열재 오시공 (준공전/1년차/미시공)	286,000
35) 각 지하대피소 바닥 및 벽체 몰탈 들뜸 일부 발생 (준공후/1년차/하자발생)	6,783,000
35) 각 지하대피소 바닥 및 벽체 몰탈 들뜸 일부 발생 (준공후/3년차/하자발생)	4,336,000
36) 지하주차장 및 공동구, 지하저수조의 바닥, 벽체, 천장 등 균열 다수 발생	
37) 지하주차장 천장 및 벽체 방수층 불량에 의한 누수 다수 발생	99,000
38) 공동구 EXP JOINT 누수 다수 발생	
39) 지하주차장 벽체 박리 다수 발생 (준공후/2년차/하자발생)	
36) 지하주차장 및 공동구, 지하저수조의 바닥, 벽체, 천장 등 균열 다수 발생	
37) 지하주차장 천장 및 벽체 방수층 불량에 의한 누수 다수 발생	126,764,000
38) 공동구 EXP JOINT 누수 다수 발생	
39) 지하주차장 벽체 박리 다수 발생 (준공후/3년차/하자발생)	
40) 지하주차장 경사로 연석부위 오픈 트랜치 미시공 - 공통 (준공전/2년차/미시공)	6,812,000
41) 지하주차장 외벽 천장 보 액체방수 및 보호몰탈 시공 누락 - 공통 (준공전/3년차/미시공)	1,248,000
42) 내벽과 외벽이 만나는 부분 내벽방수 시공 폭 미달 일부 발생 (준공전/3년차/오시공)	80,000
43) 지하주차장 기둥 코너범퍼 높이 규정 미달 - 공통 (준공전/1년차/오시공)	5,193,000
43) 지하주차장 기둥 코너범퍼 높이 규정 미달 - 공통 (준공후/1년차/하자발생)	219,000
44) 일부 공동구 바닥 액체방수 치켜올림 미시공 (준공전/3년차/미시공)	9,795,000
46) 저수조 맨홀 출입구 주변 PVC 휴스 미시공 (준공전/1년차/미시공)	1,692,000
47) 일부 공동구 출입문 마감도장 미시공 (준공전/1년차/미시공)	71,000
48) 일부 집수정 액체방수 및 보호몰탈 미시공 (준공전/3년차/미시공)	393,000
49) 지하주차장 및 공동구 트랜치 물고임 (준공전/1년차/오시공)	1,730,000
49) 지하주차장 및 공동구 트랜치 물고임 (준공전/2년차/오시공)	507,000
51) 지하주차장 환기구 난간 고정앵커 및 그레이팅 커버 앵글 녹 발생 - 공통 (준공후/1년차/하자발생)	540,000
52) 지하주차장 보수 후 마감 미처리 및 천장 데크플레이트 녹 다수 발생 - 공통 (준공후/1년차/하자발생)	74,000
52) 지하주차장 보수 후 마감 미처리 및 천장 데크플레이트 녹 다수 발생 - 공통 (준공후/3년차/하자발생)	85,031,000
53) 주민복지관 및 경비실 내·외부 벽체 균열 다수 발생 (준공후/1년차/하자발생)	179,000



53) 주민복지관 및 경비실 내·외부 벽체 균열 다수 발생 (준공후/2년차/하자발생)	4,298,000
53) 주민복지관 및 경비실 내·외부 벽체 균열 다수 발생 (준공후/3년차/하자발생)	5,605,000
55) 주민복지관 2층 숙직실 결레받이 비닐시트 시공 누락 (준공전/1년차/미시공)	82,000
56) 주민복지관 지하층 체력단련실 결레받이 폐인트 시공 누락 (준공전/1년차/미시공)	72,000
58) 주민복지관 지하층 창고의 조적벽체 상부 미장 마감 누락 (준공전/1년차/미시공)	136,000
59) 주민복지관 1, 2층 남자화장실 벽체 타일 균열 다수 발생 (준공후/1년차/하자발생)	149,000
60) 주민복지관 어린이집 램프 외벽 노출 및 부출입구 화단 경계단 균열 (준공후/1년차/하자발생)	274,000
60) 주민복지관 어린이집 램프 외벽 노출 및 부출입구 화단 경계단 균열 (준공후/2년차/하자발생)	180,000
61) 재활용품보관소 배수시설 시공 누락 (준공전/2년차/미시공)	151,000
62) 단지내 집수정 다수 누락 및 L형 측구 내 우수받이 일부 누락 발생 (준공전/2년차/미시공)	2,322,000
63) 단지 내 측구 집수정의 규격 미시공 및 규격 오시공 다수 발생 (준공전/2년차/오시공)	591,000
65) 운동장3 투시형휀스 일부 누락 (준공전/1년차/미시공)	1,303,000
66) 단지 내 고압블럭 및 점토블럭의 물고임, 단차이 과다, 균열, 오염 등 다수 (준공후/2년차/하자발생)	5,922,000
67) 단지 내 산책로 및 L형측구, 트랜치형 측구, 운동시설의 바닥 물고임 다수 (준공전/2년차/하자발생)	2,254,000
67) 단지 내 산책로 및 L형측구, 트랜치형 측구, 운동시설의 바닥 물고임 다수 (준공후/2년차/하자발생)	60,000
68) 단지 내 APRON구간 및 공동구 구간의 침하 다수 발생 (준공후/2년차/하자발생)	113,000
69) 단지 내 L형측구, 콘크리트 경계석, 아스콘의 균열 다수 발생 (준공후/2년차/하자발생)	2,834,000
70) 단지 경계 문양콘크리트 옹벽의 균열, EXP JOINT 마감불량, 철선 및 TIE 제거 불량 다수 발생 (준공전/2년차/하자발생)	68,000
70) 단지 경계 문양콘크리트 옹벽의 균열, EXP JOINT 마감불량, 철선 및 TIE 제거 불량 다수 발생 (준공후/2년차/하자발생)	410,000
71) 기타 조경시설물 녹, 흔들림, 이격, 박리, 뒤틀림 등 다수 발생 (준공후/1년차/하자발생)	42,000
소 계 (외벽도장공사: 20cm+30cm)	735,463,000
1-2. 공용부분(기계설비 개선공사)	
1) 건식PD 수도계량기합 뒷 철판 미시공(계단식 아파트) (준공전/1년차/미시공) - 차액	0
3) 중간기계실 장비 및 배관 보온 일부 오시공 (1) 열교환기 배관연결부위 보온 미시공 (준공전/1년차/미시공)	111,000
4) 난방 입상 배관 일부 시공 불량 (1) 일부동 3엘보 배관 미시공 (준공전/2년차/오시공) - 차액	404,000
5) 각 압력계 및 배수밸브 연결배관 보온 미시공 (준공전/1년차/미시공)	404,000
6) 금수관 감압면 이후 안전면 미시공 (준공전/2년차/미시공)	128,000
7) 동배수펌프 배관 (1) 방진이음 미시공 (준공전/2년차/미시공)	1,812,000



(2) 일부 압력계 위치 오시공 (준공전/2년차/오시공)	970,000
8) 오배수배관(주철관) 소제구 일부 오시공 (1) 일부 소제구 소제공간 확보 불량 (준공전/오시공/2년차)	4,049,000
(2) 일부 배수관 중간 소제구 미시공 (준공전/오시공/2년차)	745,000
(3) 일부 배수관 구배 불량 (준공전/2년차/오시공)	253,000
(4) 일부 오배수배관 요철배관 (준공전/2년차/오시공)	
(5) 배수 수평지관 기점 소제구 미시공 (준공전/2년차/미시공)	80,000
9) 지하저수조 내부일부 자재 불량 (1) 저수조 상부 결로발생에 의한 물고임 발생 (준공후/2년차/하자발생)	295,000
(3) 저수조 외부지상 맨홀 턱높이 오시공 (준공전/2년차/오시공)	218,000
소 계	9,469,000
1-3. 공용부분(부대부분 개선공사)	
1) 소화전함 및 방수용기구함 전면판 재질 오시공 (준공전/2년차/오시공) - 차액	59,981,000
2) 주차장 스프링클러 헤드 오시공 (1) 일부 하부배관 및 전기시설에 의한 살수 장해 (준공전/2년차/미시공)	114,000
(1) 일부 하부배관 및 전기시설에 의한 살수 장해 (준공전/2년차/오시공)	2,161,000
(2) 자동배수변 일부 미시공 (준공전/2년차/미시공)	48,000
(4) 드라이밸브실(웬룸) 명판 미시공 (준공전/2년차/미시공)	121,000
3) 웬룸 일부 스프링클러배관 및 헤드 미시공 (준공전/2년차/미시공)	775,000
4) 일부 소화배관 높이 오시공 (준공전/2년차/오시공)	2,557,000
6) 상수도 소화전 매립 불량 (준공후/2년차/하자발생)	99,000
7) 주차장 배수펌프 배관 일부 오시공 (1) 압력계 위치 오시공 (준공전/2년차/오시공)	228,000
(2) 배관고정용 유볼트너트 미시공 (준공전/2년차/오시공)	105,000
9) 관리동 장애인용 변기 고정불량으로 혼들림 (준공후/1년차/하자발생)	62,000
10) 소화드라이밸브용 에어콤프레셔 자재 불량 (준공전/2년차/오시공)	176,000
소 계	66,427,000
1-4. 공용부분(전기설비 개선공사)	
7) 중앙분수대 조명등 누전으로 불량 (준공후/1년차/하자발생)	572,000
8) 중앙분수대 막대형 조명등 밑 부분 고정 불량으로 혼들림 (준공후/1년차/하자발생)	61,000
9) 공용부분 1507동 2주차장 B1층(웬룸실 앞) 천장 박스 누수로 불량	
10) 공용부분 1507동 2주차장 B1층 웬룸실 천장 박스 및 누전 불량	132,000
12) 공용부분 1주차장(1504동) 천장부분 누수로 불량 (준공후/2년차/하자발생)	
11) 공용부분 1508동 1-2라인 2주차장 B1층 차량감지기함 누수로 불량 (준공후/2년차/하자발생)	448,000
13) 지하저수조 결로로 전등회로 누전으로 불량 (준공후/1년차/하자발생)	754,000
14) 방재설 화재수신반 오작동 (준공후/2년차/하자발생)	1,518,000
16) 관리실 옆 한전맨홀 우수고임 및 미마감 (준공후/2년차/하자발생)	181,000
17) 지하주차장 사각지대 발생으로 CCTV 추가 설치 (준공후/2년차/하자발생)	0
소 계	3,666,000
1-5. 공용부분(추가부분)	



1) 각 동 계단실 바닥 테라조 타일 오염 및 변색 (준공후/1년차/하자발생)	37,975,000
2) 관리사무실의 하자 선 집행분 하자 반영 (준공후/2년차/하자발생)	619,000
2) 관리사무실의 하자 선 집행분 하자 반영 (준공후/3년차/하자발생)	4,687,100
6) 지상 구간 각 동 기둥의 볼트 보호캡 미시공 (준공전/1년차/미시공)	491,000
8) 각 동 1층 주현관 옆 캐노피 우수배관의 빗물받이 없음 (준공전/2년차/미시공)	0
10) 단지내 공중전화누락, 외과담장 장미누락, 관리동 도서관의 책상 등 집기 비품 없음 (준공전/2년차/미시공)	14,903,000
11) 아파트 옥상 배수로 안전난간 없음 (준공전/2년차/미시공)	110,251,000
소 계	168,926,100
2-1. 전용부분(건축부분)	
1) 각 평형 목문짝 상·하부 마구리 도장 미시공(공통) 및 욕실문짝 부패 다수 발생 (준공전/1년차/미시공)	1,847,000
5) 20평 A,B형 발코니2 / 20평 C형 발코니3 및 24평형 발코니3,4 배수시설 미시공 - 공통 (준공전/2년차/미시공)	50,704,000
6) 각 평형 현관문틀 및 문틀 주위 벽체 결로현상으로 인한 곰팡이 및 녹 다수 발생 (준공전/1년차/오시공)	2,138,000
6) 각 평형 현관문틀 및 문틀 주위 벽체 결로현상으로 인한 곰팡이 및 녹 다수 발생 (준공후/1년차/하자발생)	2,014,000
7) 각 평형 측세대 측벽체 및 침실의 발코니 측 벽체, 천장 결로 및 곰팡이 다수 발생 (준공후/1년차/하자발생)	19,294,000
8) 각 평형 욕실, 발코니의 벽, 바닥 타일 균열 및 들뜸 다수 발생 (준공후/1년차/하자발생)	1,620,000
9) 각 평형 욕실, 발코니의 바닥 타일 구배불량에 의한 물고임 다수 발생 (준공후/1년차/하자발생)	5,503,000
10) 각 평형 각 침실 문짝 개폐불량, 수직불량, 처짐, 래핑지 박리 및 장식류 이탈 일부발생 (준공후/1년차/하자발생)	1,219,000
11) 각 평형 주방가구(씽크) 상부장 및 장식장, 신발장 등 가구류의 수직, 수평불량, 흠, 이격 등 불량 다수 발생 (준공후/1년차/하자발생)	2,536,000
12) 각 평형 거실, 주방의 바닥재 이격 들뜸 다수 발생 (준공후/1년차/하자발생)	11,915,000
13) 각 발코니 천장, 벽(누수) 균열, 벽체 마감균열, 벽체 코너 이질재 접합부 틈 및 균열 다수 발생 (준공후/1년차/하자발생)	12,888,000
13) 각 발코니 천장, 벽(누수) 균열, 벽체 마감균열, 벽체 코너 이질재 접합부 틈 및 균열 다수 발생 (준공후/2년차/하자발생)	1,969,000
13) 각 발코니 천장, 벽(누수) 균열, 벽체 마감균열, 벽체 코너 이질재 접합부 틈 및 균열 다수 발생 (준공후/3년차/하자발생)	4,397,000
14) 각 발코니 천장 선홈통 주위 누수 다수 발생 (준공후/2년차/하자발생)	1,441,000
소 계	119,485,000
2-2. 전용부분(전용부분 개선공사)	
1) 일부 위생설비 시공 불량 (1) 양변기 혼들림 발생 (준공후/1년차/하자발생)	174,000
(2) 양변기와 바닥 접착부위에서 누수 발생 (준공후/1년차/하자발생)	262,000
(3) 일부 세면기 시공 불량 (준공후/1년차/하자발생)	1,995,000



① 세면기 흔들림, ② 세면기 표면 벗겨짐, ③ 세면기 수전 회전시 빽빽함, ④ 온수 토수구로 냉수 나옴	
(3) 일부 세면기 시공 불량 (준공후/2년차/하자발생) ① 세면기 흔들림, ② 세면기 표면 벗겨짐, ③ 세면기 수전 회전시 빽빽함, ④ 온수 토수구로 냉수 나옴	832,000
(4) 일부 휴지걸이 고정 불량 (준공후/1년차/하자발생)	810,000
(5) 자동식 소화기 자재 불량 (준공후/2년차/하자발생) ① 용기내 소화액 누설, ② 수신부 작동 불량	1,304,000
소 계	5,377,000
2-3. 전용부분(추가부분)	
1) 추가 세대별 하자조사서 제출세대 (준공후/1년차/하자발생)	955,000
소 계	955,000
3-1. 추가감정(미시공/저가품질)	
1) 지하주차장 환기구 지붕 미설치 개선공사 (준공전/1년차/미시공) [공용부분]	20,797,000
2) 지하주차장 램프 입구 부위 및 지하주차장 계단 배수로 미설치 개선공사-1 (램프 입구 배수로) (준공전/2년차/미시공) [공용부분]	39,419,000
3) 단지 내 콘크리트 경계석 시공(화강석 경계석 시공의 차액) 개선사항 (준공전/2년차/오시공) [공용부분]	0
소 계	60,216,000
3-2. 추가감정(하자 및 오시공)	
1) 지하저수조 물탱크설 균열누수 및 백화현상 및 결로에 의한 전열기 탈락 개선공사 (준공후/3년차/하자발생) [공용부분]	902,000
2) 1503, 1505, 1511, 1515동 복도 바닥 구배불량에 의한 물고임 개선공사 (준공전/1년차/오시공) - 물고임부분만 교체 [공용부분]	58,948,000
2) 1503, 1505, 1511, 1515동 복도 바닥 구배불량에 의한 물고임 개선공사 (준공전/2년차/미시공) [공용부분]	4,363,000
3) 조경부위 녹지경계석 높이 오시공 개선공사 (준공전/2년차/오시공) [공용부분]	40,912,000
4) 40m ² , 49m ² 난방배관누수방지공사(전세대)	33,918,000
5) 59m ² 난방배관누수방지공사(전세대) (준공전/2년차/변경시공) [전유부분]	
4) 40m ² , 49m ² 난방배관누수방지공사(전세대)	788,000
5) 59m ² 난방배관누수방지공사(전세대) (준공후/2년차/하자발생) [전유부분]	
소 계	139,831,000
3-3. 추가감정신청사항(설계변경에 의한 품질 등 하락항목)	
1) 각 동 계단실 및 연결통로 지하층 벽 하부 낙서방지용 페인트 범위 축소	
2) 일부 동(계단형) 계단실 3층 이상 벽 낙서방지용 페인트 삭제 (준공전/1년차/변경시공) - 차액 [공용부분]	7,764,000
3) 일부 동(복도형) 최상층 복도 천장 단열 및 마감 삭제 (준공전/1년차/변경시공) - 차액 [공용부분]	6,445,000
4) 일부 동(계단형) 지하층 정면측 창호 삭제 (준공전/1년차/변경시공) - 차액 [공용부분]	34,689,000
5) 각 동 계단실 ~ 옥탑층 바닥 마감 변경 (준공전/1년차/변경시공) - 차액 [공용부분]	94,481,000
6) 각 세대 외기와 면한 천장 상부 결로방지제 시공 축소 (준공전/1년차/변경시공) - 차액 [전유부분]	24,151,000



6) 각 세대 외기와 면한 천장 상부 결로방지재 시공 축소 (준공전/1년차/미시공) - 차액 [전유부분]	16,104,000
7) 각 세대 창문 재질 변경 (사업승인·변경도면: 알루미늄, 사용승인: 플라스틱) (준공전/1년차/변경시공) - 차액 [전유부분]	207,767,000
7) 각 세대 창문 재질 변경 (사업승인·변경도면: 알루미늄, 사용승인: 플라스틱) (준공전/1년차/미시공) - 차액 [전유부분]	103,961,000
9) 각 동 최상층 세대 침실 및 거실, 주방, 현관 천장 단열재 및 천장판 삭제 (준공전/1년차/변경시공) - 차액 [전유부분]	166,509,000
10) 지하주차장 바닥 마감 변경(사업승인: 고무아스팔트몰탈, 사용승인: 칼라하드너) (준공전/1년차/변경시공) - 차액 [공용부분]	140,268,000
12) 복지관 지하전기실, 발전기실 바닥 마감 변경 (준공전/1년차/변경시공) - 차액 [공용부분]	1,151,000
13) 복지관 2층 문고, 주민공동시설, 주민상담실, 관리사무소 벽체 마감 변경 (준공전/1년차/변경시공) - 차액 [공용부분]	2,493,000
소 계	805,783,000
3.4. 기타 시공하자	
1) 쟁크배수용 바닥배수관 역류 (준공전/2년차/오시공) [전유부분]	7,315,000
소 계	7,315,000
제1심 감정 합계	2,122,913,100
4. 추가감정(항소심)	
1) 각 동 최상층 세대 천장 누수 다수 (준공후/3년차, 10년차/하자발생) [전유부분]	
(1) 공용부분 원고 선지출 보수비	64,800,000
(2) 전유부분 원고 선지출 보수비(5세대)	2,935,000
(3) 공용부분 보수비(박공지붕 수밀처리)	7,277,000
(4) 전유부분 보수비(오염마감재 교체 등)	17,772,000
소 계	92,784,000
합 계	2,215,697,100



별지 2. 관련 주택법령

○ 구 주택건설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호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합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사업주체(국가·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를 제외한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주택이 건설될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등을 거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항 이하는 생략]

제33조의2 (사용검사등) ① 사업주체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 및 대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경우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완료전이라도 완공부분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사업주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33조제4항각호 및 제5항각호의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행하는 기관은 미리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항 이하는 생략]

제33조의5 (주택의 설계 및 시공) ①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을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계도서작성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시공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와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1998. 4. 30. 대통령령 제157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사업계획의 승인대상등) ②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사업계획서
2.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3. 건축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의 제출도서.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서로 한다.
4. 제4항제2호에 정하는 서류(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 및 동령 제26조제2항제3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법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6의2. 법 제45조제1항 각호 또는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지 아니한자의 경우에 한한다)
- 6의3. 제34조의4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사업시행의 경우에 한한다)
7.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8. 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동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및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서(당해 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의 환지처분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2조의5 (사업계획승인의 고시등) ① 법 제33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 또는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명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또는 규모
4. 사업시행기간
5.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 또는 공고사항

②사업계획승인의 내용에 법 제33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사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고시 또는 공고내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33조 (표본설계도서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①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 또는 등록업자가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표본설계도서의 사본을 관계 부·처·청의 장에게 송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 또는 등록업자가 제1항의 표본설계도서에 의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제32조제2항제1호·제2호·제5호 내지 제7호의 도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32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표본설계도서의 승인 및 제3항의 사업계획 승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 또는 등록업자인 사업주체가 표본설계도서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32조제2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서중 표본설계도서를 제외한 도서를 작성하여 착공 5일전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2000. 6. 17. 건설교통부령 제24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신청등) ①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의한다.

②영 제3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에 의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영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서"라 함은 별표 2의 도서를 말한다.

⑤ 영 제32조제2항제7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의 서류를 말한다.

1. 간선시설설치계획도(축척 1만분의 1 내지 5만분의 1 도면)
2. 도시계획확인원 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사업계획승인신청일전 7일이내에 발행된 토지등기부등본(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4. 토지사용승낙서(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얻어 택지로 개발하여 분양하기로 예정된 토지에 대하여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권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사업주체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되,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를 제외한다.

⑥ 사업주체가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계획의 내용중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제5항 각호의 서류 이외에 다음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도시계획도면(축척 1만분의 1 내지 5만분의 1 도면)
2. 삭제
3.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도서

⑦ 도지사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결과보고서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에 의한 유형별·사업주체별 주택건설실적을 첨부하여야 한다.

[별표2] 위치도, 현황도, 배지도, 대지조성계획도, 조경도, 각종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마감표, 창호도, 소방 및 피난 설비도, 냉·난방설비도, 전기설비도

제20조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등) ① 법 제3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32호의 제2서식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의 공고(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말한다)를 한 후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거나 입주예정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 주택(공급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한한다)의 공급가격을 변경하는 사업비의 증액
3.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의 단위규모(공용면적을 포함한다) 및 대지지분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한다.
 - 가. 공용면적 및 대지지분의 2퍼센트이내의 증감
 - 나. 입주예정자가 없는 동 단위 공동주택의 세대당 단위규모의 변경

제21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7호의 규정은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총사업비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다만, 국민주택건설사업인 경우에는 국민주택자금의 증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의 변경중 그 설치기준이상으로의 변경(위치 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3. 대지면적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의 면적 증감. 다만, 대지면적의 증감으로 지구경계변경을 수반하거나 토지등의 수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세대수 또는 세대당 단위규모(공용면적을 포함한다)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내부 구조의 위치나 면적의 변경(승인을 얻은 면적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변경에 한한다)
5.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재료의 품질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당시의 재료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6.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되는 변경. 다만, 공공시설계획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배치조정 및 단지내



도로의 선형변경

8. 건축법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②사업주체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사용검사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신청서 및 사용검사필증은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3호의3서식에 의한 건축물 및 시설등 설치내역서
2. 공사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에 한한다)

제23조 (표본설계도서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 ① 대한주택공사 또는 등록업자인 사업주체가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본설계도서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표본설계도서에 다음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마감표
2. 각층평면도(지하층을 포함한다)
3. 입면도(전후면 및 측면)
4. 단위평면도
5. 단면도(계단부분을 포함한다)
6. 구조도(기둥·보·스라브 및 기초)
7. 구조계산서
8. 설비도(급수·위생·전기 및 소방)
9. 창호도

②대한주택공사 또는 등록업자인 사업주체가 영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시에 제출하는 도서중 영 제32조제1항제2호의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에는 표본설계도서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9호, 1997. 1. 18)

제3조(설계도서의 제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기본설계도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건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실시설계도면과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 5 제1항에서 정하는 시방서·구조계산서·수량산출서 및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설계도서의 작성) ① 기본설계도면의 작성도서별 종류와 작성도서별 축척 및 작성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실시설계도면의 작성도서별 종류와 작성도서별 축척 및 작성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설계도서의 해석)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그 내용이 설계상 주요한 사항인 경우에 감리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지시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로서 감리자 및 설계자의 해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공사계약의 내용에 따라 적용우선순위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서류 등에 특별히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설계도서의 적용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특별시방서
2. 설계도면
3. 일반시방서·표준시방서
4. 수량산출내역서
5. 승인된 시공도면



별지 3.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당심에서 추가 감정한 부분은 제외]

* [산출 방법]

각 세대 ‘창호(변경/미시공) 보수비’는 당심 감정결과 인정된 금액에, 제1심 감정인 G의 감정보고서 VI권 중 ‘공사비산출-III. 6.1. 하자보수 책임기간별 전유세대 공사비 집계표’(112쪽~175쪽)에 적용된 세대별 비율을 적용한 것이고, 각 세대 ‘기타 하자 보수비’는 감정인 G의 위 감정보고서 기재 금액을 따른 것이다.

1501동

순번	동	호수	소유자	전유면적	창호(변경)	창호(미시공)	기타 하자	계
1	1501	101		59.97	268,447	151,106	260,916	680,469
2	1501	102		59.97	268,447	151,106	199,838	619,391
3	1501	103		59.97	268,447	151,106	213,691	633,244
4	1501	104		59.97	268,447	151,106	230,234	649,787
5	1501	105		59.97	268,447	151,106	301,244	720,797
6	1501	106		59.97	268,447	151,106	213,680	633,233
7	1501	201		59.97	268,447	151,106	190,934	610,487
8	1501	202		59.97	268,447	151,106	202,174	621,727
9	1501	203		59.97	268,447	151,106	181,684	601,237
10	1501	204		59.97	268,447	151,106	197,289	616,842
11	1501	205		59.97	268,447	151,106	281,830	701,383
12	1501	206		59.97	268,447	151,106	330,279	749,832
13	1501	301		59.97	268,447	151,106	581,676	1,001,229
14	1501	302		59.97	268,447	151,106	218,632	638,185
15	1501	303		59.97	268,447	151,106	200,179	619,732
16	1501	304		59.97	268,447	151,106	219,218	638,771
17	1501	305		59.97	268,447	151,106	219,117	638,670
18	1501	306		59.97	268,447	151,106	200,805	620,358



19	1501	401		59.97	268,447	151,106	330,109	749,662
20	1501	402		59.97	268,447	151,106	181,684	601,237
21	1501	403		59.97	268,447	151,106	200,844	620,397
22	1501	404		59.97	268,447	151,106	197,577	617,130
23	1501	405		59.97	268,447	151,106	210,728	630,281
24	1501	406		59.97	268,447	151,106	190,934	610,487
25	1501	501		59.97	268,447	151,106	210,374	629,927
26	1501	502		59.97	268,447	151,106	273,139	692,692
27	1501	503		59.97	268,447	151,106	193,309	612,862
28	1501	504		59.97	268,447	151,106	247,173	666,726
29	1501	505		59.97	268,447	151,106	181,684	601,237
30	1501	506		59.97	268,447	151,106	190,934	610,487
31	1501	601		59.97	268,447	151,106	225,398	644,951
32	1501	602		59.97	268,447	151,106	190,917	610,470
33	1501	603		59.97	268,447	151,106	213,879	633,432
34	1501	604		59.97	268,447	151,106	239,206	658,759
35	1501	605		59.97	268,447	151,106	181,684	601,237
36	1501	606		59.97	268,447	151,106	635,685	1,055,238
37	1501	701		59.97	268,447	151,106	256,312	675,865
38	1501	702		59.97	268,447	151,106	326,378	745,931
39	1501	703		59.97	268,447	151,106	242,158	661,711
40	1501	704		59.97	268,447	151,106	200,026	619,579
41	1501	705		59.97	268,447	151,106	222,221	641,774
42	1501	706		59.97	268,447	151,106	190,934	610,487
43	1501	801		59.97	268,447	151,106	190,934	610,487
44	1501	802		59.97	268,447	151,106	181,684	601,237
45	1501	803		59.97	268,447	151,106	570,327	989,880
46	1501	804	미양도	59.97	268,447	151,106	208,846	628,399
47	1501	805	미양도	59.97	268,447	151,106	181,684	601,237
48	1501	806		59.97	268,447	151,106	289,223	708,776
49	1501	901		59.97	268,447	151,106	481,640	901,193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3-03-27

50	1501	902		59.97	268,447	151,106	181,684	601,237
51	1501	903		59.97	268,447	151,106	392,050	811,603
52	1501	904		59.97	268,447	151,106	181,684	601,237
53	1501	905		59.97	268,447	151,106	271,097	690,650
54	1501	906		59.97	268,447	151,106	261,559	681,112
55	1501	1001		59.97	268,447	151,106	2,371,968	2,791,521
56	1501	1002		59.97	268,447	151,106	2,324,017	2,743,570
57	1501	1003		59.97	268,447	151,106	2,134,306	2,553,859
58	1501	1004		59.97	268,447	151,106	2,262,448	2,682,001
59	1501	1005		59.97	268,447	151,106	2,370,152	2,789,705
60	1501	1006		59.97	268,447	151,106	2,355,431	2,774,984
계				3,598.20	16,106,804	9,066,365	27,387,441	52,560,61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3-03-27

1502동

순번	동	호수	소유자	전유면적	창호(변경)	창호(미시공)	기타 하자	계
1	1502	101		59.97	268,447	151,106	537,503	957,056
2	1502	102		59.97	268,447	151,106	181,684	601,237
3	1502	103		59.97	268,447	151,106	234,937	654,490
4	1502	104		59.97	268,447	151,106	185,318	604,871
5	1502	105		59.97	268,447	151,106	200,399	619,952
6	1502	106		59.97	268,447	151,106	227,308	646,861
7	1502	201		59.97	268,447	151,106	426,044	845,597
8	1502	202		59.97	268,447	151,106	189,216	608,769
9	1502	203		59.97	268,447	151,106	308,813	728,366
10	1502	204		59.97	268,447	151,106	290,828	710,381
11	1502	205		59.97	268,447	151,106	339,609	759,162
12	1502	206		59.97	268,447	151,106	331,519	751,072
13	1502	301		59.97	268,447	151,106	267,522	687,075
14	1502	302 (공유)		59.97	268,447	151,106	189,216	608,769
15	1502	303		59.97	268,447	151,106	416,463	836,016
16	1502	304		59.97	268,447	151,106	354,622	774,175
17	1502	305		59.97	268,447	151,106	200,399	619,952
18	1502	306		59.97	268,447	151,106	194,257	613,810
19	1502	401		59.97	268,447	151,106	461,811	881,364
20	1502	402		59.97	268,447	151,106	181,684	601,237
21	1502	403		59.97	268,447	151,106	227,537	647,090
22	1502	404		59.97	268,447	151,106	259,091	678,644
23	1502	405		59.97	268,447	151,106	302,005	721,558
24	1502	406		59.97	268,447	151,106	217,763	637,316
25	1502	501		59.97	268,447	151,106	241,354	660,907
26	1502	502		59.97	268,447	151,106	204,033	623,586
27	1502	503		59.97	268,447	151,106	269,835	689,388



		(공유)					
28	1502	504	59.97	268,447	151,106	195,859	615,412
29	1502	505 (공유)	59.97	268,447	151,106	220,371	639,924
30	1502	506	59.97	268,447	151,106	473,531	893,084
31	1502	601	59.97	268,447	151,106	206,928	626,481
32	1502	602	59.97	268,447	151,106	181,684	601,237
33	1502	603	59.97	268,447	151,106	181,684	601,237
34	1502	604 (공유)	59.97	268,447	151,106	205,618	625,171
35	1502	605 (공유)	59.97	268,447	151,106	330,942	750,495
36	1502	606	59.97	268,447	151,106	202,201	621,754
37	1502	701	59.97	268,447	151,106	236,895	656,448
38	1502	702	59.97	268,447	151,106	185,318	604,871
39	1502	703	59.97	268,447	151,106	181,684	601,237
40	1502	704	59.97	268,447	151,106	181,684	601,237
41	1502	705	59.97	268,447	151,106	181,684	601,237
42	1502	706	59.97	268,447	151,106	457,322	876,875
43	1502	801	59.97	268,447	151,106	283,389	702,942
44	1502	802	59.97	268,447	151,106	287,479	707,032
45	1502	803	59.97	268,447	151,106	231,157	650,710
46	1502	804	59.97	268,447	151,106	181,684	601,237
47	1502	805	59.97	268,447	151,106	181,684	601,237
48	1502	806	59.97	268,447	151,106	197,277	616,830
49	1502	901 (공유)	59.97	268,447	151,106	307,616	727,169
50	1502	902	59.97	268,447	151,106	318,839	738,392
51	1502	903	59.97	268,447	151,106	184,174	603,727
52	1502	904	59.97	268,447	151,106	181,684	601,237
53	1502	905	59.97	268,447	151,106	181,684	601,237
54	1502	906	59.97	268,447	151,106	194,568	614,12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3-03-27

55	1502	1001		59.97	268,447	151,106	2,473,006	2,892,559
56	1502	1002		59.97	268,447	151,106	2,228,138	2,647,691
57	1502	1003		59.97	268,447	151,106	2,275,430	2,694,983
58	1502	1004		59.97	268,447	151,106	2,279,245	2,698,798
59	1502	1005		59.97	268,447	151,106	2,464,437	2,883,990
60	1502	1006		59.97	268,447	151,106	2,210,284	2,629,837
계				3,598.20	16,106,804	9,066,365	27,725,950	52,899,119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3-03-27

1503동

순번	동	호수	소유자	전유면적	창호(변경)	창호(미시공)	기타 하자	계
1	1503	101	미양도	40.83	36,802	0	51,055	87,857
2	1503	102		40.83	36,802	0	121,160	157,962
3	1503	104		40.83	36,802	0	24,589	61,391
4	1503	105 (공유)		49.74	134,528	0	301,661	436,189
5	1503	106		40.83	36,802	0	124,503	161,305
6	1503	107		49.98	256,491	0	112,611	369,102
7	1503	201		40.83	36,802	0	33,601	70,403
8	1503	202		40.83	36,802	0	84,676	121,478
9	1503	203		40.83	36,802	0	45,025	81,827
10	1503	204		40.83	36,802	0	24,589	61,391
11	1503	205		49.74	134,528	0	89,816	224,344
12	1503	206		40.83	36,802	0	73,881	110,683
13	1503	207		49.98	268,447	0	41,358	309,805
14	1503	301		40.83	36,802	0	33,601	70,403
15	1503	302		40.83	36,802	0	49,012	85,814
16	1503	303		40.83	36,802	0	54,026	90,828
17	1503	304		40.83	36,802	0	59,394	96,196
18	1503	305		49.74	268,447	0	89,368	357,815
19	1503	306		40.83	268,447	0	148,309	416,756
20	1503	307		49.98	268,447	0	75,740	344,187
21	1503	401		40.83	36,802	0	115,078	151,880
22	1503	402		40.83	36,802	0	24,589	61,391
23	1503	403		40.83	36,802	0	82,156	118,958
24	1503	404		40.83	36,802	0	24,589	61,391
25	1503	405		49.74	134,528	0	89,816	224,344
26	1503	406		40.83	36,802	0	24,589	61,391
27	1503	407		49.98	268,447	0	48,627	317,074



28	1503	501	40.83	36,802	0	35,298	72,100
29	1503	502	40.83	36,802	0	24,589	61,391
30	1503	503	40.83	36,802	0	46,411	83,213
31	1503	504	40.83	36,802	0	24,589	61,391
32	1503	505	49.74	134,528	0	89,816	224,344
33	1503	506	40.83	36,802	0	24,589	61,391
34	1503	507	49.98	268,447	0	428,808	697,255
35	1503	601	40.83	36,802	0	154,355	191,157
36	1503	602	40.83	36,802	0	48,114	84,916
37	1503	603	40.83	36,802	0	43,589	80,391
38	1503	604	40.83	36,802	0	24,589	61,391
39	1503	605	49.74	134,528	0	311,073	445,601
40	1503	606	40.83	36,802	0	24,589	61,391
41	1503	607	49.98	268,447	0	97,387	365,834
42	1503	701	40.83	36,802	0	344,184	380,986
43	1503	702	40.83	36,802	0	24,589	61,391
44	1503	703	40.83	36,802	0	24,589	61,391
45	1503	704	40.83	36,802	0	155,578	192,380
46	1503	705	49.74	134,528	0	89,816	224,344
47	1503	706	40.83	36,802	0	24,589	61,391
48	1503	707	49.98	268,447	0	53,352	321,799
49	1503	801 (공유)	40.83	36,802	0	87,498	124,300
50	1503	802	40.83	36,802	0	24,589	61,391
51	1503	803	40.83	36,802	0	41,389	78,191
52	1503	804	40.83	36,802	0	30,184	66,986
53	1503	805	49.74	134,528	0	91,513	226,041
54	1503	806	40.83	36,802	0	700,620	737,422
55	1503	807	49.98	268,447	0	41,358	309,805
56	1503	901	40.83	36,802	0	556,767	593,569
57	1503	902 (공유)	40.83	36,802	0	95,475	132,277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3-03-27

58	1503	903		40.83	36,802	0	24,589	61,391
59	1503	904		40.83	36,802	0	106,574	143,376
60	1503	905		49.74	134,528	0	236,703	371,231
61	1503	906		40.83	36,802	0	80,232	117,034
62	1503	907		49.98	268,447	0	366,451	634,898
63	1503	1001		40.83	36,802	0	1,361,498	1,398,300
64	1503	1002		40.83	36,802	0	1,352,485	1,389,287
65	1503	1003		40.83	36,802	0	1,365,324	1,402,126
66	1503	1004		40.83	36,802	0	1,376,010	1,412,812
67	1503	1005		49.74	134,528	0	1,861,987	1,996,515
68	1503	1006		40.83	36,802	0	1,483,210	1,520,012
69	1503	1007		49.98	268,447	0	1,808,786	2,077,233
계				2,997.87	6,186,656	0	17,235,154	23,421,81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3-03-27

1504동

순번	동	호수	소유자	전유면적	창호(변경)	창호(미시공)	기타 하자	계
1	1504	101 (공유)		59.97	268,447	151,106	349,318	768,871
2	1504	102		59.97	268,447	151,106	242,382	661,935
3	1504	103		59.97	268,447	151,106	203,815	623,368
4	1504	104		59.97	268,447	151,106	181,684	601,237
5	1504	105		59.97	268,447	151,106	357,914	777,467
6	1504	106		59.97	268,447	151,106	438,086	857,639
7	1504	201		59.97	268,447	151,106	280,417	699,970
8	1504	202		59.97	268,447	151,106	482,716	902,269
9	1504	203		59.97	268,447	151,106	182,015	601,568
10	1504	204 (공유)		59.97	268,447	151,106	215,397	634,950
11	1504	205		59.97	268,447	151,106	209,013	628,566
12	1504	206		59.97	268,447	151,106	222,797	642,350
13	1504	301		59.97	268,447	151,106	207,192	626,745
14	1504	302		59.97	268,447	151,106	208,815	628,368
15	1504	303		59.97	268,447	151,106	181,684	601,237
16	1504	304		59.97	268,447	151,106	188,975	608,528
17	1504	305		59.97	268,447	151,106	278,124	697,677
18	1504	306		59.97	268,447	151,106	301,917	721,470
19	1504	401		59.97	268,447	151,106	277,927	697,480
20	1504	402		59.97	268,447	151,106	223,010	642,563
21	1504	403		59.97	268,447	151,106	181,684	601,237
22	1504	404		59.97	268,447	151,106	184,415	603,968
23	1504	405		59.97	268,447	151,106	181,684	601,237
24	1504	406		59.97	268,447	151,106	211,267	630,820
25	1504	501		59.97	268,447	151,106	422,383	841,936
26	1504	502		59.97	268,447	151,106	318,838	738,391



27	1504	503	59.97	268,447	151,106	241,445	660,998
28	1504	504	59.97	268,447	151,106	233,704	653,257
29	1504	505	59.97	268,447	151,106	202,564	622,117
30	1504	506	59.97	268,447	151,106	205,297	624,850
31	1504	601	59.97	268,447	151,106	398,902	818,455
32	1504	602	59.97	268,447	151,106	181,684	601,237
33	1504	603 (공유)	59.97	268,447	151,106	182,015	601,568
34	1504	604	59.97	268,447	151,106	208,399	627,952
35	1504	605	59.97	268,447	151,106	192,592	612,145
36	1504	606	59.97	268,447	151,106	200,906	620,459
37	1504	701	59.97	268,447	151,106	415,462	835,015
38	1504	702	59.97	268,447	151,106	307,960	727,513
39	1504	703	59.97	268,447	151,106	349,551	769,104
40	1504	704	59.97	268,447	151,106	219,958	639,511
41	1504	705	59.97	268,447	151,106	190,117	609,670
42	1504	706	59.97	268,447	151,106	325,710	745,263
43	1504	801	59.97	268,447	151,106	286,433	705,986
44	1504	802 (공유)	59.97	268,447	151,106	243,243	662,796
45	1504	803	59.97	268,447	151,106	376,025	795,578
46	1504	804	59.97	268,447	151,106	292,625	712,178
47	1504	805	59.97	268,447	151,106	282,862	702,415
48	1504	806	59.97	268,447	151,106	211,287	630,840
49	1504	901	59.97	268,447	151,106	717,679	1,137,232
50	1504	902	59.97	268,447	151,106	206,363	625,916
51	1504	903	59.97	268,447	151,106	283,308	702,861
52	1504	904	59.97	268,447	151,106	182,265	601,818
53	1504	905	59.97	268,447	151,106	199,169	618,722
54	1504	906	59.97	268,447	151,106	245,591	665,144
55	1504	1001	59.97	268,447	151,106	240,374	659,927
56	1504	1002	59.97	268,447	151,106	209,677	629,230



57	1504	1003		59.97	268,447	151,106	190,717	610,270
58	1504	1004		59.97	268,447	151,106	225,180	644,733
59	1504	1005		59.97	268,447	151,106	233,029	652,582
60	1504	1006 (공유)		59.97	268,447	151,106	661,697	1,081,250
61	1504	1101		59.97	268,447	151,106	282,389	701,942
62	1504	1102		59.97	268,447	151,106	209,063	628,616
63	1504	1103		59.97	268,447	151,106	825,854	1,245,407
64	1504	1104		59.97	268,447	151,106	261,648	681,201
65	1504	1105		59.97	268,447	151,106	507,850	927,403
66	1504	1106		59.97	268,447	151,106	223,637	643,190
67	1504	1201		59.97	268,447	151,106	190,934	610,487
68	1504	1202		59.97	268,447	151,106	296,432	715,985
69	1504	1203		59.97	268,447	151,106	200,179	619,732
70	1504	1204		59.97	268,447	151,106	185,195	604,748
71	1504	1205		59.97	268,447	151,106	356,864	776,417
72	1504	1206	미양도	59.97	268,447	151,106	190,934	610,487
73	1504	1301	미양도	59.97	268,447	151,106	190,934	610,487
74	1504	1302	미양도	59.97	268,447	151,106	196,078	615,631
75	1504	1303	미양도	59.97	268,447	151,106	507,850	927,403
76	1504	1304	미양도	59.97	268,447	151,106	181,684	601,237
77	1504	1305		59.97	268,447	151,106	181,684	601,237
78	1504	1306		59.97	268,447	151,106	370,068	789,621
79	1504	1401		59.97	268,447	151,106	2,175,149	2,594,702
80	1504	1402		59.97	268,447	151,106	2,263,451	2,683,004
81	1504	1403		59.97	268,447	151,106	2,165,900	2,585,453
82	1504	1404		59.97	268,447	151,106	2,312,448	2,732,001
83	1504	1405		59.97	268,447	151,106	2,165,900	2,585,453
84	1504	1406		59.97	268,447	151,106	2,194,681	2,614,234
계				5,037.48	22,549,526	12,692,911	34,714,065	69,956,502



1505동

순번	동	호수	소유자	전유면적	창호(변경)	창호(미시공)	기타 하자	계
1	1505	101	미양도	49.98	256,491	0	178,041	434,532
2	1505	102		40.83	36,802	0	24,589	61,391
3	1505	103		40.83	36,802	0	24,589	61,391
4	1505	105		40.83	36,802	0	55,581	92,383
5	1505	106		49.74	134,528	0	91,057	225,585
6	1505	107		40.83	36,802	0	24,589	61,391
7	1505	108		49.98	256,491	0	282,039	538,530
8	1505	201		49.98	256,491	0	207,924	464,415
9	1505	202		40.83	36,802	0	24,589	61,391
10	1505	203		40.83	36,802	0	24,589	61,391
11	1505	204		40.83	36,802	0	24,589	61,391
12	1505	205		40.83	36,802	0	124,030	160,832
13	1505	206		49.74	134,528	0	236,420	370,948
14	1505	207		40.83	36,802	0	24,589	61,391
15	1505	208		49.98	256,491	0	41,538	298,029
16	1505	301		49.98	256,491	0	55,905	312,396
17	1505	302		40.83	36,802	0	32,444	69,246
18	1505	303		40.83	36,802	0	24,589	61,391
19	1505	304		40.83	36,802	0	24,589	61,391
20	1505	305		40.83	36,802	0	52,130	88,932
21	1505	306		49.74	134,528	0	90,829	225,357
22	1505	307		40.83	36,802	0	24,589	61,391
23	1505	308		49.98	256,491	0	45,756	302,247
24	1505	401		49.98	256,491	0	296,790	553,281
25	1505	402		40.83	36,802	0	24,589	61,391
26	1505	403		40.83	36,802	0	24,589	61,391
27	1505	404		40.83	36,802	0	24,589	61,391
28	1505	405	미양도	40.83	36,802	0	24,589	61,391



29	1505	406		49.74	134,528	0	89,816	224,344
30	1505	407		40.83	36,802	0	24,589	61,391
31	1505	408		49.98	256,491	0	500,618	757,109
32	1505	501		49.98	256,491	0	41,358	297,849
33	1505	502		40.83	36,802	0	26,341	63,143
34	1505	503		40.83	36,802	0	121,880	158,682
35	1505	504		40.83	36,802	0	24,589	61,391
36	1505	505		40.83	36,802	0	24,589	61,391
37	1505	506		49.74	134,528	0	100,169	234,697
38	1505	507		40.83	36,802	0	24,589	61,391
39	1505	508		49.98	256,491	0	60,073	316,564
40	1505	601		49.98	256,491	0	544,730	801,221
41	1505	602		40.83	36,802	0	24,589	61,391
42	1505	603		40.83	36,802	0	80,113	116,915
43	1505	604		40.83	36,802	0	24,589	61,391
44	1505	605		40.83	36,802	0	24,589	61,391
45	1505	606 (공유)		49.74	134,528	0	211,958	346,486
46	1505	607		40.83	36,802	0	93,724	130,526
47	1505	608		49.98	256,491	0	403,188	659,679
48	1505	701		49.98	256,491	0	422,901	679,392
49	1505	702		40.83	36,802	0	55,617	92,419
50	1505	703	미양도	40.83	36,802	0	73,881	110,683
51	1505	704		40.83	36,802	0	24,589	61,391
52	1505	705		40.83	36,802	0	83,144	119,946
53	1505	706		49.74	134,528	0	190,421	324,949
54	1505	707		40.83	36,802	0	55,186	91,988
55	1505	708		49.98	256,491	0	296,044	552,535
56	1505	801		49.98	256,491	0	41,358	297,849
57	1505	802		40.83	36,802	0	254,476	291,278
58	1505	803		40.83	36,802	0	24,589	61,39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3-03-27

59	1505	804		40.83	36,802	0	35,497	72,299
60	1505	805		40.83	36,802	0	24,589	61,391
61	1505	806		49.74	134,528	0	284,329	418,857
62	1505	807		40.83	36,802	0	31,857	68,659
63	1505	808		49.98	256,491	0	436,855	693,346
64	1505	901		49.98	256,491	0	317,293	573,784
65	1505	902		40.83	36,802	0	24,589	61,391
66	1505	903		40.83	36,802	0	24,589	61,391
67	1505	904		40.83	36,802	0	24,589	61,391
68	1505	905		40.83	36,802	0	339,529	376,331
69	1505	906 (공유)		49.74	134,528	0	89,816	224,344
70	1505	907		40.83	36,802	0	157,093	193,895
71	1505	908		49.98	256,491	0	371,227	627,718
72	1505	1001		49.98	256,491	0	1,919,703	2,176,194
73	1505	1002		40.83	36,802	0	1,381,782	1,418,584
74	1505	1003		40.83	36,802	0	1,356,105	1,392,907
75	1505	1004		40.83	36,802	0	1,356,119	1,392,921
76	1505	1005 (공유)		40.83	36,802	0	1,352,485	1,389,287
77	1505	1006		49.74	134,528	0	1,809,333	1,943,861
78	1505	1007		40.83	36,802	0	1,492,360	1,529,162
79	1505	1008 (공유)		49.98	256,491	0	1,866,706	2,123,197
계				3,497.67	8,278,410	0	20,799,472	29,077,882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3-03-27

1506동

순번	동	호수	소유자	전유면적	창호(변경)	창호(미시공)	기타 하자	계
1	1506	101	59.97	268,447	151,106	346,322	765,875	
2	1506	102		268,447	151,106	231,917	651,470	
3	1506	103		268,447	151,106	181,684	601,237	
4	1506	104		268,447	151,106	178,003	597,556	
5	1506	105		268,447	151,106	179,303	598,856	
6	1506	106		268,447	151,106	181,022	600,575	
7	1506	201		268,447	151,106	224,252	643,805	
8	1506	202		268,447	151,106	206,353	625,906	
9	1506	203		268,447	151,106	179,040	598,593	
10	1506	204		268,447	151,106	229,072	648,625	
11	1506	205		268,447	151,106	186,668	606,221	
12	1506	206		268,447	151,106	190,934	610,487	
13	1506	301		268,447	151,106	227,796	647,349	
14	1506	302		268,447	151,106	296,906	716,459	
15	1506	303		268,447	151,106	187,110	606,663	
16	1506	304		268,447	151,106	176,362	595,915	
17	1506	305 (공유)		268,447	151,106	188,584	608,137	
18	1506	306		268,447	151,106	194,568	614,121	
19	1506	401		268,447	151,106	190,934	610,487	
20	1506	402		268,447	151,106	171,771	591,324	
21	1506	403		268,447	151,106	171,771	591,324	
22	1506	404		268,447	151,106	190,117	609,670	
23	1506	405		268,447	151,106	351,595	771,148	
24	1506	406		268,447	151,106	190,934	610,487	
25	1506	501		268,447	151,106	633,718	1,053,271	
26	1506	502		268,447	151,106	171,771	591,324	
27	1506	503		268,447	151,106	196,931	616,484	



28	1506	504	59.97	268,447	151,106	186,833	606,386
29	1506	505	59.97	268,447	151,106	203,840	623,393
30	1506	506 (공유)	59.97	268,447	151,106	189,455	609,008
31	1506	601	59.97	268,447	151,106	520,734	940,287
32	1506	602	59.97	268,447	151,106	171,771	591,324
33	1506	603	59.97	268,447	151,106	267,575	687,128
34	1506	604	59.97	268,447	151,106	172,977	592,530
35	1506	605	59.97	268,447	151,106	297,697	717,250
36	1506	606	59.97	268,447	151,106	296,644	716,197
37	1506	701	59.97	268,447	151,106	725,951	1,145,504
38	1506	702	59.97	268,447	151,106	171,771	591,324
39	1506	703	59.97	268,447	151,106	202,785	622,338
40	1506	704	59.97	268,447	151,106	628,497	1,048,050
41	1506	705	59.97	268,447	151,106	228,146	647,699
42	1506	706	59.97	268,447	151,106	195,738	615,291
43	1506	801	59.97	268,447	151,106	527,045	946,598
44	1506	802	59.97	268,447	151,106	173,812	593,365
45	1506	803	59.97	268,447	151,106	182,265	601,818
46	1506	804	59.97	268,447	151,106	181,684	601,237
47	1506	805	59.97	268,447	151,106	171,771	591,324
48	1506	806	59.97	268,447	151,106	320,733	740,286
49	1506	901	59.97	268,447	151,106	390,745	810,298
50	1506	902	59.97	268,447	151,106	338,769	758,322
51	1506	903	59.97	268,447	151,106	338,845	758,398
52	1506	904	59.97	268,447	151,106	171,771	591,324
53	1506	905	59.97	268,447	151,106	181,684	601,237
54	1506	906 (공유)	59.97	268,447	151,106	190,934	610,487
55	1506	1001	59.97	268,447	151,106	181,022	600,575
56	1506	1002	59.97	268,447	151,106	254,232	673,785
57	1506	1003	59.97	268,447	151,106	181,684	601,237



58	1506	1004	59.97	268,447	151,106	412,115	831,668
59	1506	1005	59.97	268,447	151,106	242,844	662,397
60	1506	1006	59.97	268,447	151,106	181,022	600,575
61	1506	1101	59.97	268,447	151,106	456,902	876,455
62	1506	1102	59.97	268,447	151,106	171,771	591,324
63	1506	1103	59.97	268,447	151,106	181,684	601,237
64	1506	1104	59.97	268,447	151,106	171,771	591,324
65	1506	1105	59.97	268,447	151,106	171,771	591,324
66	1506	1106	59.97	268,447	151,106	196,324	615,877
67	1506	1201	59.97	268,447	151,106	230,902	650,455
68	1506	1202	59.97	268,447	151,106	186,830	606,383
69	1506	1203	59.97	268,447	151,106	171,771	591,324
70	1506	1204	59.97	268,447	151,106	489,060	908,613
71	1506	1205	59.97	268,447	151,106	269,724	689,277
72	1506	1206	59.97	268,447	151,106	181,321	600,874
73	1506	1301	59.97	268,447	151,106	335,754	755,307
74	1506	1302	59.97	268,447	151,106	205,209	624,762
75	1506	1303	59.97	268,447	151,106	210,666	630,219
76	1506	1304	59.97	268,447	151,106	184,174	603,727
77	1506	1305	59.97	268,447	151,106	179,755	599,308
78	1506	1306	59.97	268,447	151,106	600,248	1,019,801
79	1506	1401	59.97	268,447	151,106	2,773,304	3,192,857
80	1506	1402 (공유)	59.97	268,447	151,106	2,134,148	2,553,701
81	1506	1403	59.97	268,447	151,106	2,176,553	2,596,106
82	1506	1404	59.97	268,447	151,106	2,124,237	2,543,790
83	1506	1405	59.97	268,447	151,106	2,328,705	2,748,258
84	1506	1406	59.97	268,447	151,106	2,249,191	2,668,744
계			5,037.48	22,549,526	12,692,911	33,520,604	56,070,130



1507동

순번	동	호수	소유자	전유면적	창호(변경)	창호(미시공)	기타 하자	계
1	1507	101		59.97	268,447	151,106	221,224	640,777
2	1507	102		59.97	268,447	151,106	378,371	797,924
3	1507	103		59.97	268,447	151,106	211,052	630,605
4	1507	104		59.97	268,447	151,106	181,022	600,575
5	1507	201		59.97	268,447	151,106	493,948	913,501
6	1507	202		59.97	268,447	151,106	375,144	794,697
7	1507	203		59.97	268,447	151,106	180,269	599,822
8	1507	204		59.97	268,447	151,106	207,239	626,792
9	1507	301		59.97	268,447	151,106	440,374	859,927
10	1507	302		59.97	268,447	151,106	267,822	687,375
11	1507	303		59.97	268,447	151,106	318,485	738,038
12	1507	304		59.97	268,447	151,106	436,867	856,420
13	1507	401		59.97	268,447	151,106	580,025	999,578
14	1507	402		59.97	268,447	151,106	193,437	612,990
15	1507	403		59.97	268,447	151,106	200,139	619,692
16	1507	404		59.97	268,447	151,106	188,301	607,854
17	1507	501		59.97	268,447	151,106	567,960	987,513
18	1507	502		59.97	268,447	151,106	208,802	628,355
19	1507	503		59.97	268,447	151,106	171,771	591,324
20	1507	504		59.97	268,447	151,106	194,568	614,121
21	1507	601		59.97	268,447	151,106	181,022	600,575
22	1507	602		59.97	268,447	151,106	264,679	684,232
23	1507	603		59.97	268,447	151,106	181,684	601,237
24	1507	604		59.97	268,447	151,106	226,545	646,098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3-03-27

25	1507	701		59.97	268,447	151,106	224,289	643,842
26	1507	702		59.97	268,447	151,106	202,676	622,229
27	1507	703 (공유)		59.97	268,447	151,106	171,771	591,324
28	1507	704		59.97	268,447	151,106	206,790	626,343
29	1507	801		59.97	268,447	151,106	558,630	978,183
30	1507	802		59.97	268,447	151,106	207,300	626,853
31	1507	803		59.97	268,447	151,106	171,771	591,324
32	1507	804		59.97	268,447	151,106	329,384	748,937
33	1507	901		59.97	268,447	151,106	224,766	644,319
34	1507	902		59.97	268,447	151,106	178,003	597,556
35	1507	903		59.97	268,447	151,106	267,575	687,128
36	1507	904		59.97	268,447	151,106	267,035	686,588
37	1507	1001		59.97	268,447	151,106	2,549,370	2,968,923
38	1507	1002		59.97	268,447	151,106	2,368,496	2,788,049
39	1507	1003		59.97	268,447	151,106	2,124,237	2,543,790
40	1507	1004		59.97	268,447	151,106	2,159,255	2,578,808
계				2,398.80	10,737,870	6,044,243	19,082,098	35,864,21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3-03-27

1508동

순번	동	호수	소유자	전유면적	창호(변경)	창호(미시공)	기타 하자	계
1	1508	101		49.71	190,514	151,106	172,346	513,966
2	1508	102		49.71	190,514	151,106	122,340	463,960
3	1508	103		49.71	190,514	151,106	450,422	792,042
4	1508	104		49.71	190,514	151,106	255,037	596,657
5	1508	105		49.71	190,514	151,106	122,340	463,960
6	1508	106		49.71	190,514	151,106	762,379	1,103,999
7	1508	201		59.97	268,447	151,106	190,934	610,487
8	1508	202		59.97	268,447	151,106	181,684	601,237
9	1508	203		59.97	268,447	151,106	180,087	599,640
10	1508	204		59.97	268,447	151,106	286,391	705,944
11	1508	205		59.97	268,447	151,106	171,771	591,324
12	1508	206		59.97	268,447	151,106	658,682	1,078,235
13	1508	301		59.97	268,447	151,106	238,317	657,870
14	1508	302		59.97	268,447	151,106	208,430	627,983
15	1508	303		59.97	268,447	151,106	171,771	591,324
16	1508	304		59.97	268,447	151,106	319,703	739,256
17	1508	305		59.97	268,447	151,106	171,771	591,324
18	1508	306		59.97	268,447	151,106	346,023	765,576
19	1508	401		59.97	268,447	151,106	357,481	777,034
20	1508	402		59.97	268,447	151,106	214,618	634,171
21	1508	403		59.97	268,447	151,106	198,542	618,095
22	1508	404		59.97	268,447	151,106	232,293	651,846
23	1508	405		59.97	268,447	151,106	181,684	601,237
24	1508	406		59.97	268,447	151,106	299,135	718,688



25	1508	501	59.97	268,447	151,106	231,959	651,512
26	1508	502 (공유)	59.97	268,447	151,106	205,099	624,652
27	1508	503	59.97	268,447	151,106	369,008	788,561
28	1508	504	59.97	268,447	151,106	217,544	637,097
29	1508	505	59.97	268,447	151,106	342,450	762,003
30	1508	506 (공유)	59.97	268,447	151,106	204,256	623,809
31	1508	601	59.97	268,447	151,106	440,483	860,036
32	1508	602	59.97	268,447	151,106	241,524	661,077
33	1508	603	59.97	268,447	151,106	325,440	744,993
34	1508	604	59.97	268,447	151,106	201,412	620,965
35	1508	605	59.97	268,447	151,106	214,993	634,546
36	1508	606 (공유)	59.97	268,447	151,106	252,797	672,350
37	1508	701	59.97	268,447	151,106	225,010	644,563
38	1508	702	59.97	268,447	151,106	195,053	614,606
39	1508	703	59.97	268,447	151,106	171,771	591,324
40	1508	704	59.97	268,447	151,106	185,281	604,834
41	1508	705	59.97	268,447	151,106	223,010	642,563
42	1508	706	59.97	268,447	151,106	357,588	777,141
43	1508	801	59.97	268,447	151,106	514,086	933,639
44	1508	802	59.97	268,447	151,106	176,408	595,961
45	1508	803	59.97	268,447	151,106	175,405	594,958
46	1508	804	59.97	268,447	151,106	181,684	601,237
47	1508	805	59.97	268,447	151,106	181,684	601,237
48	1508	806	59.97	268,447	151,106	590,070	1,009,623
49	1508	901	59.97	268,447	151,106	181,022	600,575
50	1508	902	59.97	268,447	151,106	199,021	618,574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3-03-27

51	1508	903		59.97	268,447	151,106	171,771	591,324
52	1508	904		59.97	268,447	151,106	172,539	592,092
53	1508	905		59.97	268,447	151,106	352,117	771,670
54	1508	906		59.97	268,447	151,106	225,479	645,032
55	1508	1001		59.97	268,447	151,106	2,133,487	2,553,040
56	1508	1002		59.97	268,447	151,106	2,161,509	2,581,062
57	1508	1003		59.97	268,447	151,106	2,136,005	2,555,558
58	1508	1004		59.97	268,447	151,106	2,179,140	2,598,693
59	1508	1005		59.97	268,447	151,106	2,262,457	2,682,010
60	1508	1006		59.97	268,447	151,106	2,598,445	3,017,998
계				3,536.64	15,639,208	9,066,365	27,691,188	52,396,76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3-03-27

1509동

순번	동	호수	소유자	전유면적	창호(변경)	창호(미시공)	기타 하자	계
1	1509	101	201 (공유)	49.71	190,514	151,106	307,592	649,212
2	1509	102		49.71	190,514	151,106	275,179	616,799
3	1509	103		49.71	190,514	151,106	122,340	463,960
4	1509	104		49.71	190,514	151,106	249,897	591,517
5	1509	105		49.71	190,514	151,106	132,255	473,875
6	1509	106		49.71	190,514	151,106	147,738	489,358
7	1509	201 (공유)		59.97	268,447	151,106	225,290	644,843
8	1509	202		59.97	268,447	151,106	182,035	601,588
9	1509	203		59.97	268,447	151,106	245,714	665,267
10	1509	204		59.97	268,447	151,106	181,684	601,237
11	1509	205		59.97	268,447	151,106	187,664	607,217
12	1509	206 (공유)		59.97	268,447	151,106	214,524	634,077
13	1509	301		59.97	268,447	151,106	190,934	610,487
14	1509	302		59.97	268,447	151,106	249,045	668,598
15	1509	303		59.97	268,447	151,106	182,734	602,287
16	1509	304		59.97	268,447	151,106	218,514	638,067
17	1509	305		59.97	268,447	151,106	229,351	648,904
18	1509	306		59.97	268,447	151,106	181,022	600,575
19	1509	401		59.97	268,447	151,106	278,935	698,488
20	1509	402		59.97	268,447	151,106	191,555	611,108
21	1509	403		59.97	268,447	151,106	194,212	613,765
22	1509	404		59.97	268,447	151,106	181,743	601,296
23	1509	405		59.97	268,447	151,106	198,830	618,383



24	1509	406	59.97	268,447	151,106	530,657	950,210
25	1509	501 (공유)	59.97	268,447	151,106	220,342	639,895
26	1509	502	59.97	268,447	151,106	180,390	599,943
27	1509	503 (공유)	59.97	268,447	151,106	211,280	630,833
28	1509	504	59.97	268,447	151,106	171,771	591,324
29	1509	505	59.97	268,447	151,106	188,953	608,506
30	1509	506	59.97	268,447	151,106	526,872	946,425
31	1509	601	59.97	268,447	151,106	196,094	615,647
32	1509	602	59.97	268,447	151,106	171,771	591,324
33	1509	603	59.97	268,447	151,106	275,180	694,733
34	1509	604	59.97	268,447	151,106	197,577	617,130
35	1509	605	59.97	268,447	151,106	243,474	663,027
36	1509	606	59.97	268,447	151,106	477,770	897,323
37	1509	701	59.97	268,447	151,106	190,934	610,487
38	1509	702	59.97	268,447	151,106	181,684	601,237
39	1509	703	59.97	268,447	151,106	181,684	601,237
40	1509	704	59.97	268,447	151,106	171,771	591,324
41	1509	705	59.97	268,447	151,106	184,113	603,666
42	1509	706	59.97	268,447	151,106	198,203	617,756
43	1509	801	59.97	268,447	151,106	500,220	919,773
44	1509	802	59.97	268,447	151,106	268,064	687,617
45	1509	803	59.97	268,447	151,106	224,791	644,344
46	1509	804	59.97	268,447	151,106	251,313	670,866
47	1509	805	59.97	268,447	151,106	181,743	601,296
48	1509	806	59.97	268,447	151,106	294,867	714,420
49	1509	901	59.97	268,447	151,106	235,966	655,519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3-03-27

50	1509	902		59.97	268,447	151,106	233,669	653,222
51	1509	903		59.97	268,447	151,106	219,804	639,357
52	1509	904		59.97	268,447	151,106	263,586	683,139
53	1509	905		59.97	268,447	151,106	266,054	685,607
54	1509	906		59.97	268,447	151,106	323,043	742,596
55	1509	1001		59.97	268,447	151,106	2,750,245	3,169,798
56	1509	1002		59.97	268,447	151,106	2,315,584	2,735,137
57	1509	1003		59.97	268,447	151,106	2,188,815	2,608,368
58	1509	1004		59.97	268,447	151,106	2,124,237	2,543,790
59	1509	1005		59.97	268,447	151,106	2,135,145	2,554,698
60	1509	1006		59.97	268,447	151,106	2,560,217	2,979,770
계				3,536.64	15,639,208	9,066,365	26,806,670	51,512,243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3-03-27

1510동

순번	동	호수	소유자	전유면적	창호(변경)	창호(미시공)	기타 하자	계
1	1510	101		49.71	190,514	151,106	132,174	473,794
2	1510	102		49.71	190,514	151,106	440,114	781,734
3	1510	103 (공유)		49.71	190,514	151,106	163,587	505,207
4	1510	104		49.71	190,514	151,106	191,466	533,086
5	1510	105		49.71	190,514	151,106	129,609	471,229
6	1510	106		49.71	190,514	151,106	138,862	480,482
7	1510	201		59.97	268,447	151,106	255,961	675,514
8	1510	202		59.97	268,447	151,106	185,318	604,871
9	1510	203		59.97	268,447	151,106	235,853	655,406
10	1510	204		59.97	268,447	151,106	234,931	654,484
11	1510	205		59.97	268,447	151,106	171,771	591,324
12	1510	206		59.97	268,447	151,106	188,502	608,055
13	1510	301		59.97	268,447	151,106	224,840	644,393
14	1510	302		59.97	268,447	151,106	207,268	626,821
15	1510	303		59.97	268,447	151,106	171,771	591,324
16	1510	304		59.97	268,447	151,106	194,511	614,064
17	1510	305		59.97	268,447	151,106	261,614	681,167
18	1510	306		59.97	268,447	151,106	183,742	603,295
19	1510	401		59.97	268,447	151,106	208,524	628,077
20	1510	402		59.97	268,447	151,106	254,926	674,479
21	1510	403		59.97	268,447	151,106	257,171	676,724
22	1510	404		59.97	268,447	151,106	197,888	617,441
23	1510	405		59.97	268,447	151,106	246,848	666,401
24	1510	406		59.97	268,447	151,106	181,022	600,575



25	1510	501	59.97	268,447	151,106	564,369	983,922
26	1510	502	59.97	268,447	151,106	196,540	616,093
27	1510	503	59.97	268,447	151,106	171,771	591,324
28	1510	504	59.97	268,447	151,106	171,771	591,324
29	1510	505	59.97	268,447	151,106	181,684	601,237
30	1510	506	59.97	268,447	151,106	201,872	621,425
31	1510	601	59.97	268,447	151,106	213,082	632,635
32	1510	602	59.97	268,447	151,106	181,684	601,237
33	1510	603	59.97	268,447	151,106	171,771	591,324
34	1510	604	59.97	268,447	151,106	171,771	591,324
35	1510	605	59.97	268,447	151,106	202,564	622,117
36	1510	606	59.97	268,447	151,106	255,250	674,803
37	1510	701	59.97	268,447	151,106	334,965	754,518
38	1510	702	59.97	268,447	151,106	239,919	659,472
39	1510	703	59.97	268,447	151,106	171,771	591,324
40	1510	704	59.97	268,447	151,106	212,229	631,782
41	1510	705	59.97	268,447	151,106	542,428	961,981
42	1510	706	59.97	268,447	151,106	298,896	718,449
43	1510	801	59.97	268,447	151,106	181,022	600,575
44	1510	802	59.97	268,447	151,106	177,165	596,718
45	1510	803	59.97	268,447	151,106	222,448	642,001
46	1510	804	59.97	268,447	151,106	181,684	601,237
47	1510	805	59.97	268,447	151,106	207,675	627,228
48	1510	806	59.97	268,447	151,106	530,771	950,324
49	1510	901	59.97	268,447	151,106	365,758	785,311
50	1510	902	59.97	268,447	151,106	835,527	1,255,080
51	1510	903	59.97	268,447	151,106	171,771	591,324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3-03-27

52	1510	904		59.97	268,447	151,106	344,287	763,840
53	1510	905		59.97	268,447	151,106	185,281	604,834
54	1510	906		59.97	268,447	151,106	304,568	724,121
55	1510	1001		59.97	268,447	151,106	2,143,402	2,562,955
56	1510	1002		59.97	268,447	151,106	2,124,237	2,543,790
57	1510	1003 (공유)		59.97	268,447	151,106	2,230,056	2,649,609
58	1510	1004		59.97	268,447	151,106	2,134,148	2,553,701
59	1510	1005		59.97	268,447	151,106	2,195,367	2,614,920
60	1510	1006		59.97	268,447	151,106	2,138,472	2,558,025
계				3,536.64	15,639,208	9,066,364.91	26,216,249	50,921,822



1511동

순번	동	호수	소유자	전유면적	창호(변경)	창호(미시공)	기타 하자	계
1	1511	101		40.83	36,802	0	53,119	89,921
2	1511	102		40.83	36,802	0	14,675	51,477
3	1511	104	미양도	40.83	36,802	0	14,675	51,477
4	1511	105		49.74	134,528	0	108,117	242,645
5	1511	106		40.83	36,802	0	24,589	61,391
6	1511	107		40.83	36,802	0	251,793	288,595
7	1511	201		40.83	36,802	0	23,687	60,489
8	1511	202		40.83	36,802	0	98,916	135,718
9	1511	203		40.83	36,802	0	26,247	63,049
10	1511	204		40.83	36,802	0	91,901	128,703
11	1511	205		49.74	134,528	0	108,509	243,037
12	1511	206		40.83	36,802	0	14,675	51,477
13	1511	207		40.83	36,802	0	33,601	70,403
14	1511	301		40.83	36,802	0	23,687	60,489
15	1511	302		40.83	36,802	0	136,392	173,194
16	1511	303		40.83	36,802	0	327,984	364,786
17	1511	304		40.83	36,802	0	103,333	140,135
18	1511	305 (공유)		49.74	134,528	0	348,099	482,627
19	1511	306		40.83	36,802	0	24,589	61,391
20	1511	307		40.83	36,802	0	33,601	70,403
21	1511	401		40.83	36,802	0	23,687	60,489
22	1511	402		40.83	36,802	0	14,675	51,477
23	1511	403		40.83	36,802	0	29,400	66,202



24	1511	404	40.83	36,802	0	24,589	61,391
25	1511	405	49.74	134,528	0	79,489	214,017
26	1511	406	40.83	36,802	0	14,675	51,477
27	1511	407	40.83	36,802	0	64,680	101,482
28	1511	501	40.83	36,802	0	55,974	92,776
29	1511	502	40.83	36,802	0	102,305	139,107
30	1511	503	40.83	36,802	0	184,680	221,482
31	1511	504	40.83	36,802	0	33,390	70,192
32	1511	505	49.74	134,528	0	214,698	349,226
33	1511	506	40.83	36,802	0	14,675	51,477
34	1511	507	40.83	36,802	0	33,601	70,403
35	1511	601	40.83	36,802	0	185,042	221,844
36	1511	602	40.83	36,802	0	92,359	129,161
37	1511	603	40.83	36,802	0	129,496	166,298
38	1511	604	40.83	36,802	0	14,675	51,477
39	1511	605	49.74	134,528	0	108,606	243,134
40	1511	606	40.83	36,802	0	14,675	51,477
41	1511	607	40.83	36,802	0	187,080	223,882
42	1511	701	40.83	36,802	0	29,919	66,721
43	1511	702	40.83	36,802	0	37,713	74,515
44	1511	703	40.83	36,802	0	121,944	158,746
45	1511	704	40.83	36,802	0	104,227	141,029
46	1511	705	49.74	134,528	0	163,177	297,705
47	1511	706	40.83	36,802	0	14,675	51,477
48	1511	707	40.83	36,802	0	82,893	119,695
49	1511	801	40.83	36,802	0	214,355	251,157
50	1511	802	40.83	36,802	0	24,589	61,39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3-03-27

51	1511	803		40.83	36,802	0	41,079	77,881
52	1511	804		40.83	36,802	0	24,589	61,391
53	1511	805		49.74	134,528	0	233,473	368,001
54	1511	806		40.83	36,802	0	14,675	51,477
55	1511	807		40.83	36,802	0	25,949	62,751
56	1511	901		40.83	36,802	0	284,168	320,970
57	1511	902		40.83	36,802	0	25,602	62,404
58	1511	903 (공유)		40.83	36,802	0	24,589	61,391
59	1511	904		40.83	36,802	0	295,380	332,182
60	1511	905		49.74	134,528	0	79,489	214,017
61	1511	906		40.83	36,802	0	30,080	66,882
62	1511	907		40.83	36,802	0	23,687	60,489
63	1511	1001		40.83	36,802	0	1,662,699	1,699,501
64	1511	1002		40.83	36,802	0	1,352,444	1,389,246
65	1511	1003		40.83	36,802	0	1,393,341	1,430,143
66	1511	1004		40.83	36,802	0	1,352,485	1,389,287
67	1511	1005		49.74	134,528	0	2,013,180	2,147,708
68	1511	1006		40.83	36,802	0	1,342,573	1,379,375
69	1511	1007		40.83	36,802	0	1,536,969	1,573,771
계				2,906.37	3,516,601	0	16,034,583	19,551,184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3-03-27

1512동

순번	동	호수	소유자	전유면적	창호(변경)	창호(미시공)	기타 하자	계
1	1512	101	59.97	268,447	151,106	193,276	612,829	
2	1512	102		268,447	151,106	171,771	591,324	
3	1512	103		268,447	151,106	370,078	789,631	
4	1512	104		268,447	151,106	228,674	648,227	
5	1512	105		268,447	151,106	192,037	611,590	
6	1512	106		268,447	151,106	196,648	616,201	
7	1512	201		268,447	151,106	181,022	600,575	
8	1512	202		268,447	151,106	236,324	655,877	
9	1512	203		268,447	151,106	181,684	601,237	
10	1512	204		268,447	151,106	188,584	608,137	
11	1512	205		268,447	151,106	179,667	599,220	
12	1512	206		268,447	151,106	192,907	612,460	
13	1512	301		268,447	151,106	307,792	727,345	
14	1512	302		268,447	151,106	171,771	591,324	
15	1512	303		268,447	151,106	181,684	601,237	
16	1512	304		268,447	151,106	218,710	638,263	
17	1512	305		268,447	151,106	182,095	601,648	
18	1512	306		268,447	151,106	218,294	637,847	
19	1512	401		268,447	151,106	198,128	617,681	
20	1512	402		268,447	151,106	197,755	617,308	
21	1512	403		268,447	151,106	181,684	601,237	
22	1512	404		268,447	151,106	344,132	763,685	
23	1512	405		268,447	151,106	317,326	736,879	
24	1512	406		268,447	151,106	190,934	610,487	



25	1512	501	59.97	268,447	151,106	181,022	600,575
26	1512	502	59.97	268,447	151,106	172,102	591,655
27	1512	503	59.97	268,447	151,106	185,132	604,685
28	1512	504	59.97	268,447	151,106	352,361	771,914
29	1512	505	59.97	268,447	151,106	234,773	654,326
30	1512	506	59.97	268,447	151,106	248,235	667,788
31	1512	601	59.97	268,447	151,106	206,426	625,979
32	1512	602	59.97	268,447	151,106	206,608	626,161
33	1512	603	59.97	268,447	151,106	181,743	601,296
34	1512	604	59.97	268,447	151,106	272,247	691,800
35	1512	605	59.97	268,447	151,106	179,068	598,621
36	1512	606	59.97	268,447	151,106	263,567	683,120
37	1512	701	59.97	268,447	151,106	265,279	684,832
38	1512	702	59.97	268,447	151,106	192,247	611,800
39	1512	703	59.97	268,447	151,106	182,265	601,818
40	1512	704	59.97	268,447	151,106	203,696	623,249
41	1512	705	59.97	268,447	151,106	345,594	765,147
42	1512	706	59.97	268,447	151,106	595,261	1,014,814
43	1512	801	59.97	268,447	151,106	651,247	1,070,800
44	1512	802	59.97	268,447	151,106	201,179	620,732
45	1512	803	59.97	268,447	151,106	183,401	602,954
46	1512	804	59.97	268,447	151,106	171,771	591,324
47	1512	805	59.97	268,447	151,106	181,684	601,237
48	1512	806	59.97	268,447	151,106	208,691	628,244
49	1512	901	59.97	268,447	151,106	190,934	610,487
50	1512	902	59.97	268,447	151,106	213,752	633,305
51	1512	903	59.97	268,447	151,106	181,684	601,237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3-03-27

52	1512	904 (공유)		59.97	268,447	151,106	171,771	591,324
53	1512	905		59.97	268,447	151,106	205,074	624,627
54	1512	906		59.97	268,447	151,106	181,022	600,575
55	1512	1001		59.97	268,447	151,106	2,268,411	2,687,964
56	1512	1002		59.97	268,447	151,106	2,190,793	2,610,346
57	1512	1003		59.97	268,447	151,106	2,195,205	2,614,758
58	1512	1004		59.97	268,447	151,106	2,536,964	2,956,517
59	1512	1005		59.97	268,447	151,106	2,219,032	2,638,585
60	1512	1006		59.97	268,447	151,106	2,515,762	2,935,315
계				3,598.20	16,106,804	9,066,365	26,358,980	51,532,149



1513동

순번	동	호수	소유자	전유면적	창호(변경)	창호(미시공)	기타 하자	계
1	1513	101 (공유)		59.97	268,447	151,106	210,030	629,583
2	1513	102		59.97	268,447	151,106	262,476	682,029
3	1513	103		59.97	268,447	151,106	223,444	642,997
4	1513	104		59.97	268,447	151,106	322,388	741,941
5	1513	105		59.97	268,447	151,106	234,239	653,792
6	1513	106		59.97	268,447	151,106	190,934	610,487
7	1513	201		59.97	268,447	151,106	607,633	1,027,186
8	1513	202		59.97	268,447	151,106	282,556	702,109
9	1513	203		59.97	268,447	151,106	251,111	670,664
10	1513	204 (공유)		59.97	268,447	151,106	181,684	601,237
11	1513	205		59.97	268,447	151,106	226,908	646,461
12	1513	206		59.97	268,447	151,106	347,412	766,965
13	1513	301		59.97	268,447	151,106	190,934	610,487
14	1513	302		59.97	268,447	151,106	181,684	601,237
15	1513	303		59.97	268,447	151,106	181,684	601,237
16	1513	304		59.97	268,447	151,106	182,430	601,983
17	1513	305		59.97	268,447	151,106	238,026	657,579
18	1513	306		59.97	268,447	151,106	190,934	610,487
19	1513	401		59.97	268,447	151,106	190,934	610,487
20	1513	402		59.97	268,447	151,106	186,669	606,222
21	1513	403		59.97	268,447	151,106	204,762	624,315
22	1513	404		59.97	268,447	151,106	181,684	601,237
23	1513	405		59.97	268,447	151,106	193,501	613,054
24	1513	406		59.97	268,447	151,106	190,934	610,487



25	1513	501	59.97	268,447	151,106	269,530	689,083
26	1513	502	59.97	268,447	151,106	198,587	618,140
27	1513	503 (공유)	59.97	268,447	151,106	186,631	606,184
28	1513	504	59.97	268,447	151,106	210,110	629,663
29	1513	505	59.97	268,447	151,106	181,684	601,237
30	1513	506	59.97	268,447	151,106	195,919	615,472
31	1513	601	59.97	268,447	151,106	190,934	610,487
32	1513	602	59.97	268,447	151,106	213,928	633,481
33	1513	603	59.97	268,447	151,106	447,797	867,350
34	1513	604	59.97	268,447	151,106	181,684	601,237
35	1513	605	59.97	268,447	151,106	181,684	601,237
36	1513	606 (공유)	59.97	268,447	151,106	445,932	865,485
37	1513	701	59.97	268,447	151,106	419,595	839,148
38	1513	702	59.97	268,447	151,106	315,944	735,497
39	1513	703	59.97	268,447	151,106	181,684	601,237
40	1513	704	59.97	268,447	151,106	377,031	796,584
41	1513	705	59.97	268,447	151,106	311,620	731,173
42	1513	706	59.97	268,447	151,106	190,934	610,487
43	1513	801	59.97	268,447	151,106	418,334	837,887
44	1513	802	59.97	268,447	151,106	303,715	723,268
45	1513	803	59.97	268,447	151,106	185,318	604,871
46	1513	804	59.97	268,447	151,106	204,554	624,107
47	1513	805	59.97	268,447	151,106	181,684	601,237
48	1513	806	59.97	268,447	151,106	190,070	609,623
49	1513	901	59.97	268,447	151,106	263,770	683,323
50	1513	902	59.97	268,447	151,106	181,684	601,237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3-03-27

51	1513	903		59.97	268,447	151,106	235,221	654,774
52	1513	904		59.97	268,447	151,106	181,684	601,237
53	1513	905		59.97	268,447	151,106	196,487	616,040
54	1513	906		59.97	268,447	151,106	432,388	851,941
55	1513	1001		59.97	268,447	151,106	2,561,586	2,981,139
56	1513	1002		59.97	268,447	151,106	2,161,907	2,581,460
57	1513	1003	미양도	59.97	268,447	151,106	2,324,314	2,743,867
58	1513	1004		59.97	268,447	151,106	2,185,870	2,605,423
59	1513	1005		59.97	268,447	151,106	2,134,794	2,554,347
60	1513	1006		59.97	268,447	151,106	2,270,818	2,690,371
계				3,598.20	16,106,804	9,066,365	26,970,417	52,143,586



1514동

순번	동	호수	소유자	전유면적	창호(변경)	창호(미시공)	기타 하자	계
1	1514	101		59.97	268,447	151,106	192,608	612,161
2	1514	102		59.97	268,447	151,106	219,277	638,830
3	1514	103		59.97	268,447	151,106	181,684	601,237
4	1514	104		59.97	268,447	151,106	268,766	688,319
5	1514	105		59.97	268,447	151,106	181,684	601,237
6	1514	106		59.97	268,447	151,106	199,556	619,109
7	1514	201		59.97	268,447	151,106	190,934	610,487
8	1514	202		59.97	268,447	151,106	205,117	624,670
9	1514	203		59.97	268,447	151,106	213,482	633,035
10	1514	204		59.97	268,447	151,106	251,423	670,976
11	1514	205		59.97	268,447	151,106	188,953	608,506
12	1514	206		59.97	268,447	151,106	481,038	900,591
13	1514	301		59.97	268,447	151,106	195,089	614,642
14	1514	302		59.97	268,447	151,106	196,180	615,733
15	1514	303 (공유)		59.97	268,447	151,106	181,684	601,237
16	1514	304		59.97	268,447	151,106	181,684	601,237
17	1514	305		59.97	268,447	151,106	181,684	601,237
18	1514	306		59.97	268,447	151,106	221,049	640,602
19	1514	401		59.97	268,447	151,106	229,537	649,090
20	1514	402		59.97	268,447	151,106	188,963	608,516
21	1514	403		59.97	268,447	151,106	181,684	601,237
22	1514	404		59.97	268,447	151,106	181,684	601,237
23	1514	405		59.97	268,447	151,106	204,032	623,585
24	1514	406		59.97	268,447	151,106	216,879	636,432



25	1514	501	59.97	268,447	151,106	258,772	678,325
26	1514	502	59.97	268,447	151,106	185,007	604,560
27	1514	503	59.97	268,447	151,106	201,526	621,079
28	1514	504	59.97	268,447	151,106	216,601	636,154
29	1514	505	59.97	268,447	151,106	286,750	706,303
30	1514	506	59.97	268,447	151,106	244,697	664,250
31	1514	601	59.97	268,447	151,106	190,934	610,487
32	1514	602	59.97	268,447	151,106	226,713	646,266
33	1514	603	59.97	268,447	151,106	185,674	605,227
34	1514	604	59.97	268,447	151,106	169,373	588,926
35	1514	605	59.97	268,447	151,106	181,684	601,237
36	1514	606	59.97	268,447	151,106	226,620	646,173
37	1514	701	59.97	268,447	151,106	202,151	621,704
38	1514	702	59.97	268,447	151,106	240,905	660,458
39	1514	703	59.97	268,447	151,106	185,132	604,685
40	1514	704	59.97	268,447	151,106	223,944	643,497
41	1514	705 (공유)	59.97	268,447	151,106	251,866	671,419
42	1514	706	59.97	268,447	151,106	190,934	610,487
43	1514	801	59.97	268,447	151,106	190,934	610,487
44	1514	802	59.97	268,447	151,106	262,050	681,603
45	1514	803	59.97	268,447	151,106	338,386	757,939
46	1514	804	59.97	268,447	151,106	239,029	658,582
47	1514	805	59.97	268,447	151,106	203,722	623,275
48	1514	806	59.97	268,447	151,106	223,008	642,561
49	1514	901	59.97	268,447	151,106	190,934	610,487
50	1514	902 (공유)	59.97	268,447	151,106	228,548	648,10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3-03-27

51	1514	903		59.97	268,447	151,106	181,684	601,237
52	1514	904		59.97	268,447	151,106	230,417	649,970
53	1514	905		59.97	268,447	151,106	181,684	601,237
54	1514	906		59.97	268,447	151,106	190,934	610,487
55	1514	1001		59.97	268,447	151,106	2,171,905	2,591,458
56	1514	1002		59.97	268,447	151,106	2,192,239	2,611,792
57	1514	1003 (공유)		59.97	268,447	151,106	2,227,757	2,647,310
58	1514	1004		59.97	268,447	151,106	2,222,054	2,641,607
59	1514	1005		59.97	268,447	151,106	2,170,406	2,589,959
60	1514	1006		59.97	268,447	151,106	2,184,592	2,604,145
계				3,598.20	16,106,804	9,066,365	24,834,237	50,007,406



1515동

순번	동	호수	소유자	전유면적	창호(변경)	창호(미시공)	기타 하자	계
1	1515	101		49.98	256,491	0	288,161	544,652
2	1515	102		40.83	36,802	0	24,589	61,391
3	1515	103		40.83	36,802	0	24,589	61,391
4	1515	104		40.83	36,802	0	36,304	73,106
5	1515	105		40.83	36,802	0	374,862	411,664
6	1515	106		40.83	36,802	0	59,965	96,767
7	1515	107 (공유)		49.98	256,491	0	456,915	713,406
8	1515	201		49.98	256,491	0	41,358	297,849
9	1515	202		40.83	36,802	0	24,589	61,391
10	1515	203		40.83	36,802	0	24,589	61,391
11	1515	204		40.83	36,802	0	30,821	67,623
12	1515	205		40.83	36,802	0	24,589	61,391
13	1515	206		40.83	36,802	0	24,589	61,391
14	1515	207		49.98	256,491	0	56,430	312,921
15	1515	301		49.98	256,491	0	41,358	297,849
16	1515	302		40.83	36,802	0	24,589	61,391
17	1515	303		40.83	36,802	0	24,589	61,391
18	1515	304		40.83	36,802	0	46,992	83,794
19	1515	305		40.83	36,802	0	31,490	68,292
20	1515	306		40.83	36,802	0	28,223	65,025
21	1515	307		49.98	256,491	0	637,660	894,151
22	1515	401		49.98	256,491	0	436,668	693,159
23	1515	402		40.83	36,802	0	29,574	66,376
24	1515	403		40.83	36,802	0	24,589	61,391



25	1515	404		40.83	36,802	0	24,589	61,391
26	1515	405		40.83	36,802	0	28,091	64,893
27	1515	406		40.83	36,802	0	31,868	68,670
28	1515	407		49.98	256,491	0	49,512	306,003
29	1515	501		49.98	256,491	0	649,234	905,725
30	1515	502		40.83	36,802	0	24,589	61,391
31	1515	503		40.83	36,802	0	24,589	61,391
32	1515	504		40.83	36,802	0	24,589	61,391
33	1515	505		40.83	36,802	0	24,589	61,391
34	1515	506		40.83	36,802	0	30,863	67,665
35	1515	507		49.98	256,491	0	41,358	297,849
36	1515	601		49.98	256,491	0	420,266	676,757
37	1515	602		40.83	36,802	0	53,170	89,972
38	1515	603		40.83	36,802	0	31,728	68,530
39	1515	604		40.83	36,802	0	24,589	61,391
40	1515	605		40.83	36,802	0	24,589	61,391
41	1515	606		40.83	36,802	0	39,011	75,813
42	1515	607		49.98	256,491	0	41,358	297,849
43	1515	701		49.98	256,491	0	241,411	497,902
44	1515	702		40.83	36,802	0	24,589	61,391
45	1515	703		40.83	36,802	0	50,573	87,375
46	1515	704		40.83	36,802	0	28,223	65,025
47	1515	705		40.83	36,802	0	24,589	61,391
48	1515	706		40.83	36,802	0	24,589	61,391
49	1515	707		49.98	256,491	0	268,658	525,149
50	1515	801		49.98	256,491	0	41,358	297,849
51	1515	802		40.83	36,802	0	31,858	68,66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3-03-27

52	1515	803		40.83	36,802	0	48,114	84,916
53	1515	804		40.83	36,802	0	121,044	157,846
54	1515	805		40.83	36,802	0	185,588	222,390
55	1515	806		40.83	36,802	0	119,670	156,472
56	1515	807		49.98	256,491	0	411,696	668,187
57	1515	901		49.98	256,491	0	503,388	759,879
58	1515	902		40.83	36,802	0	31,675	68,477
59	1515	903		40.83	36,802	0	24,589	61,391
60	1515	904		40.83	36,802	0	28,223	65,025
61	1515	905		40.83	36,802	0	24,589	61,391
62	1515	906		40.83	36,802	0	24,589	61,391
63	1515	907		49.98	256,491	0	969,947	1,226,438
64	1515	1001		49.98	256,491	0	1,825,233	2,081,724
65	1515	1002		40.83	36,802	0	1,462,751	1,499,553
66	1515	1003		40.83	36,802	0	1,448,152	1,484,954
67	1515	1004		40.83	36,802	0	1,401,777	1,438,579
68	1515	1005		40.83	36,802	0	1,653,180	1,689,982
69	1515	1006		40.83	36,802	0	1,352,485	1,389,287
70	1515	1007		49.98	256,491	0	2,435,961	2,692,452
계				3,041.10	6,969,934	0	19,215,163	26,185,097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3-03-27

별지 4. 채권양도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1. 제1심 감정 전유부분

동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동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1501	51,330,974 ¹⁾	1509	51,512,243
1502	52,899,119	1510	50,921,822
1503	23,052,708 ²⁾	1511	19,499,707 ³⁾
1504	69,044,778 ⁴⁾	1512	51,532,149
1505	28,844,417 ⁵⁾	1513	49,399,719 ⁶⁾
1506	56,070,130	1514	50,007,406
1507	35,864,211	1515	26,185,097
1508	52,396,761	소계	668,561,241

2. 당심 추가감정 전유부분

추가감정결과 인정된 하자보수비 20,707,000원 – 1513동 1003호 하자보수비 371,149원⁷⁾
= 20,335,851원 [끝]

1) 52,560,610원 – 628,399원(804호) – 610,237(805호)

2) 23,421,810원 – 369,102원(107호)

3) 19,551,184원 – 51,477원(104호)

4) 69,956,502원 – 610,487원(1206호) – 601,237원(1304호)

5) 29,077,882원 – 61,391원(202호) – 61,391원(405호) – 110,683원(703호)

6) 52,143,586원 – 2,743,867원(1003호)

7) 당심 감정인 H의 감정보고서 206쪽, 211쪽, 229쪽을 근거로 계산한 금액임